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소득 규모 상향조정 에 대한 타당성 검토

December, 2009

TAX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해외 건설의 수출 전략 산업화

2.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3. 비과세 금액 확대 시 정부 세수 변동 추정

4. 해외 사례 검토

III. 요약 및 결론

I. 서론

1. 용역의 배경
2. 용역의 범위 및 목표
3. 용역의 책임한계



I. 서론

1 용역의 배경

➡ 본 용역의 발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화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수출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하였음
- 경기침체의 여파는 해외수요 뿐만 아니라 국내 내수부문에도 악영향을 주어서 국내소비 및 투자수요도 급격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 특히, 자산가치의 하락과 주택부문 수요의 침체는 여러 내수산업 중 건설업 분야에 직격탄을 가하여 건설업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 그동안 국내건설 산업은 가계부문에서 발생한 폭넓은 주택수요에 기반하여 성장하여 왔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주택가치 상승과 가계대출의 부실심화로 주택수요 증가에 제동이 걸림. 중단기적으로 내수창출을 통한 건설업 성장전략은 일정한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
- 해외건설 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도 최근 3년간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

- 국내 주택부문 수요의 정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수요발굴 및 신시장 확보가 매우 중요해짐
- 최근 플랜트 부문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한국업체들의 국제적 위상과 비중이 매우 빠르게 신장되고 있음
- 해외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시장 개척 및 건설부문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관건은 전문적인 해외건설 인력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음
- 따라서 보다 폭넓은 글로벌 건설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음
- 본 용역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해외 건설 전문인력 양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현재 고려중인 소득세 비과세 금액의 상향조정안과 관련하여 동 방안이 해외건설업 활성화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음



1. 서론

2 용역의 범위 및 목표 ➔ 본 용역의 범위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의 범위 : 본 용역은 국내 해외건설업의 발전도모를 위해서 현재 조세지원책으로 고려 중에 있는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소득 규모 상향 조정안의 정책타당성에 대한 검토업무를 그 주된 업무의 범위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용역에서는 국내 건설업계가 해외 건설부문에서 이룩한 성과 및 국제적인 위상, 향후 발전전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국 해외건설업의 현황과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해외근로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기존 150만원에서 추가 상향조정 할 경우 정부 세수에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주요 해외 국가의 유사 정책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용역의 목표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소득 범위와 관련하여 동 비과세 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 및 배경 그리고 실제 정책시행 시 발생하는 정부 재정부문의 영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토해양부가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데 대하여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직접적인 목적을 둠



I. 서론

3 용역의 책임한계 ➡ 본 용역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의 출처: 본 용역 보고서에서 다루거나 인용하고 있는 자료는 해외건설협회 및 국토해양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거나 여타 국책연구기관의 논문 및 발간자료 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통계수치, 산업정보 등을 이용한 것인 바, 이러한 인용자료의 사실검증 여부에 관해서 별도의 검증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해외 입법사례 분석: 해외 자료 특히 해외 입법사례와 관련하여 각 국가간에 맺어진 조세조약 및 상위법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또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감면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별로 적용되는 조세협약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으며, 단지 각 국가의 내국법인 및 거주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부 조세법만을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또는 본 용역의 분석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세관련 특례법이나 실무지침의 존재로 인하여 본 보고서상에서 기술된 여러 감면사례에 관한 내용이 실제 감면내용과 상이해 질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추정 및 가정의 한계: 본 보고서상에서 분석되고 있는 각종 추정치들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가정 및 전제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및 전제사항이 달라질 경우 그 추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접근 가능한 자료의 한계 및 분석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계량적인 분석의 상당부분이 단순화 및 평균화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발생하는 결과는 본 보고서상의 추정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상의 정보이용 : 본 보고서상에 담겨진 정보는 본 용역 고유의 배경 속에서 특수한 용역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삼정회계법인의 사전허락이 없는 한, 본 용역의 목적 이외 기타 어떠한 용도에도 본 보고서상의 분석내용과 추정수치, 서술문구, 의견 등이 사용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불법적인 정보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이용자 측에 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II. 본론

- 1. 해외건설의 수출 전략 산업화
 - 1.1 건설 경기의 침체
 - 1.2 건설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1.3 해외 건설업의 급격한 성장
 - 1.4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해외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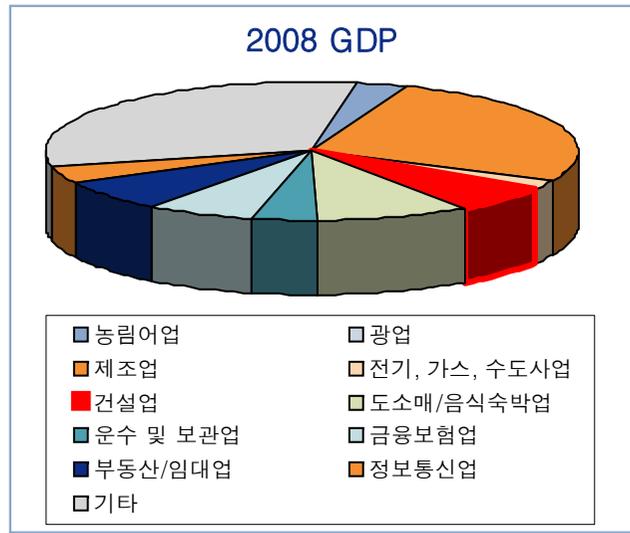
II. 본론

1. 해외건설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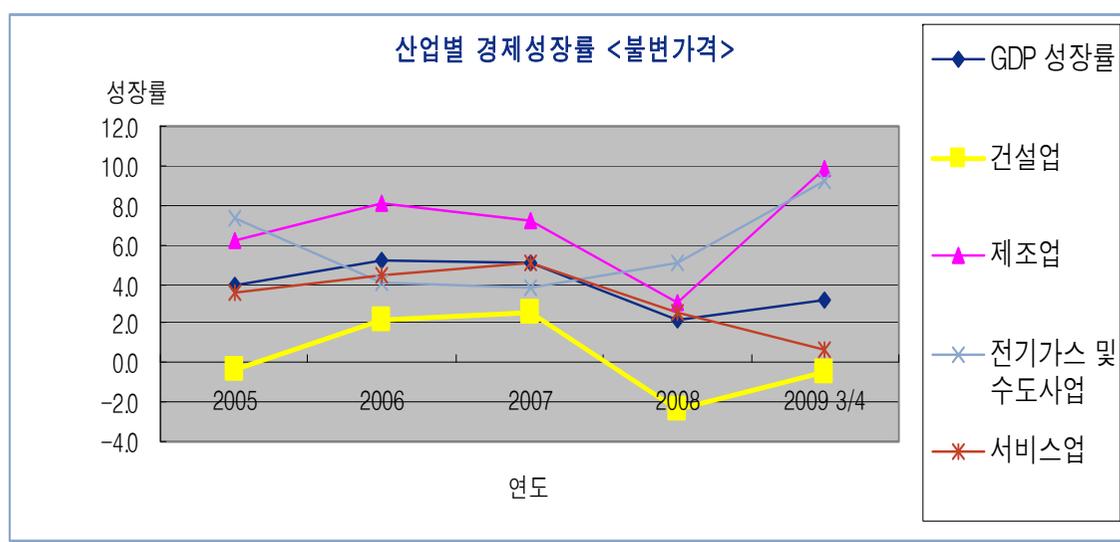
1.1 건설경기의 침체

➔ 국내 건설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국내총생산 중 건설업의 생산비중은 6.2%로, 총 생산규모는 60조 5,457억원으로 제조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과 함께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임.
- 2008년, 2009년 국제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주택부문의 내수 의존율이 높은 건설업의 타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두드러짐
-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산업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건설업 성장률은 GDP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급격한 감소 이후 2009년 3분기 현재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충분한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Source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2008년 산업별 GDP(실질)



Source : 국토해양부 건설정보실 제공 2009년 3분기 건설관련통계

II. 본론

1. 해외건설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2 건설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 해당함

■ 2007년 기준 전체 산업의 평균 생산 유발계수는 1.940으로 나타났는데, 산업별로는 제조업 2.073, 건설업 2.055, 농림어업 1.774, 서비스업 1.721, 광업 1.705, 전력/가스/수도업 1.474 순이었음. 2006년도와 비교하면 서비스업(1.716=>1.721), 건설업(2.040=>2.055)등은 상승추세를 이어간 반면, 제조업(2.082=>2.073)은 비중이 하락하였음.

■ 생산 유발계수 2.055의 의미는 수요 측면에서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 1원이 발생할 때, 경제 전체에 1.985원의 생산을 유발시킨다는 의미임.

■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제조업과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건설업 생산유발계수 (2007년, 최종수요 1단위당)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2007년	2.055	1.721	2.073	1.774	1.705
2006년	2.040	1.716	2.082	1.782	1.707
2005년	2.020	1.695	2.064	1.746	1.722

Source : 한국은행 발표 2007년 산업연관표

II. 본론

1. 해외건설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2 건설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 해당함

■ 2007년 기준 전체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722로 '05년(0.741) '06년(0.733) 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개별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0.855, 농림어업 0.854, 광업 0.836, 건설업 0.789, 제조업 0.6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와 비교하면 서비스업(0.862=>0.855), 건설업(0.805=>0.789), 제조업(0.639=>0.626), 농림어업(0.859=>0.854), 광업(0.844=>0.836) 등 산업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하락기조를 유지하였음

■ 부가가치유발계수 0.789의 의미는 수요 측면에서 건설 부문 최종수요 1원당 국민경제 전체에 0.789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유발시킨다는 의미임

■ 건설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3차 산업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함

건설업 부가가치유발계수 (2007년, 최종수요 1단위당)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2007년	0.789	0.855	0.626	0.854	0.836
2006년	0.805	0.862	0.639	0.859	0.844
2005년	0.812	0.865	0.650	0.865	0.847

Source : 한국은행 발표 2007년 산업연관표

II. 본론

1. 해외건설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2 건설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 해당함

- 2007년 중 우리나라 전체 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2005년 불변가격 기준)는 10억원당 9.5명으로, 건설업이 14.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12.6명, 광업 8.3명, 농림어업 7.3명, 제조업 6.6명, 전력/가스/수도 3.1명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고용유발계수 14.8명의 의미란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 수가 14.8명에 이르는 의미함

-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추이를 보면, 제조업이 2000년(8.8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2000년 13.7명에서 2005년 12.6명으로 하락한 이후 정체를 지속하였으며, 건설업은 2000년 이후 건설경기에 따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음
-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타 산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건설업 고용 유발계수 (2005년, 최종수요 10억원당 명)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2007년	14.8	12.6	6.6	7.3	8.3
2006년	15.2	12.6	6.9	7.5	8.0
2005년	14.8	12.6	7.2	7.2	8.3

Source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추이 도표 참조

II. 본론

1. 해외건설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2 건설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결론)

➡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 해당함

-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파생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내 건설업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음. 2008년 이후로 건설산업의 성장율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산업연관표상 건설업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건설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산업연관효과는 여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건설업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됨
- 그동안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위기의 한국건설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청원이 있어왔음. 정부에서도 건설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건설업 경기 부양정책을 입안/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침체된 주택부문 수요를 되살리는 방향의 정책으로는 자산가치의 과도한 상승 및 금융부문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대출 관련 금융감독을 완화하거나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더 이상 적실성을 가지지 못함.
-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하게 위축된 국내 건설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내수부문의 건설수요가 아니라 해외건설시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최근 국내 주요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건설계약 수주실적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개발/실시할 필요 있음.

II. 본론

1. 해외건설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3 해외 건설업의 급격한 성장

➔ 최근 국내 주요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09년 12월 말에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국내 최초로 UAE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계약을 수주하였음.

■ 동 플랜트 수출의 전체 계약규모는 원전운영 등 후속 수출효과를 포함할 경우 400억불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고부가가치 대규모 플랜트 수출의 신기원을 열었음

■ 2009년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기존의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여 사상 최대치인 491억불을 달성하였음

■ 정부차원에서 대통령직접 나서 해외건설업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기조임

UAE 400억달러는 시작일뿐 1조달러 시장 열린다

한국형 원전 수출 쾌거...李대통령 현지서 담판

◆400억달러 UAE원전 수주◆

27일 오후 4시(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이 아부다비 힐튼호텔에 있는 프레스센터에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내외신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국으로서 앞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고 감격해했다. 사상 최대 규모 수출 프로젝트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한국이 따냈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에서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아부다비 = 박상선 기자>

이 대통령은 27일 UAE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에서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400억달러(약 47조원) 규모 원전 수주를 확정지었다.

Source : 2009년 12월 28일자 매일경제 신문 (인터넷판)

UAE 원자력 발전소 수출효과는



· 직접 수출효과 : 200억달러
· 후속 수출효과 : 200억달러
(60년간 원전 연료비, 운영, 정비)



· 현대차 NF쏘나타 200만대
(대당 2만달러)



· 초대형 유조선 360척
(대당 1억1,000만달러)



· 에어버스A380 114대
(대당 3억2,000만달러)



· 10년간 일자리 창출 총 11만명



· 국가 인지도 상승
· 한·UAE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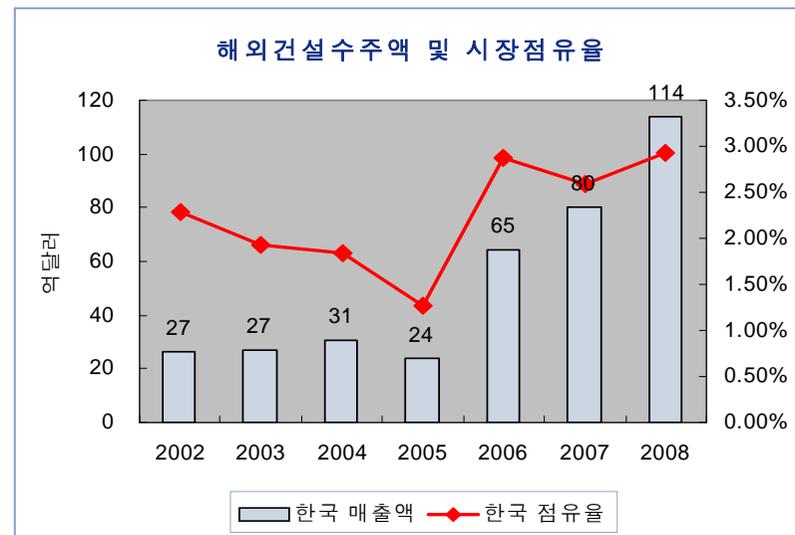
II. 본론

1. 해외건설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3 해외 건설업의 급격한 성장 ➡ 최근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건설업 진출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 해외건설 시장의 규모는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건설업체의 해외 부문 진출 성과(매출액 기준) 역시 2005년 이래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08년 현재 3%에 육박함

출처: 아래의 해외건설시장 전체규모 정보는 건설업계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ENR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는 세계 TOP 225위 건설사의 매출액을 전체 시장으로 가정하여 이용한 것임. 한국의 매출액 자료 역시 비교가능성을 위해서 ENR TOP 225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매출액을 한국의 전체 해외건설업 부문 매출액으로 가정한 것임. 따라서 아래 점유율 정보 등은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지난 7년간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추이

(단위:억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시장	1,165	1,398	1,675	1,894	2,244	3,098	3,900
한국 매출액	27	27	31	24	65	80	114
한국 점유율	2.28%	1.92%	1.84%	1.27%	2.88%	2.59%	2.93%

II. 본론

1. 해외건설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3 해외 건설업의 급격한 성장

➔ 최근 해외 건설업은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90년대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은 증가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좌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약건수는 감소하되 전체 수주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국내 업체의 해외 건설 수주계약의 성격이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함.
주1)

■ 2000년대 들어서면서 플랜트건설의 비중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금액	총누계	2008년	2009년	증감율(%)
계약금액	349,269,876	47,639,720	49,147,869	3.17%
공사건수	7,193 건	642 건	559 건	-12.93%

구분	2008년	2009년	증감율(%)
진출국가	77 국	80 국	3.90%
진출업체	281 개	272 개	-3.20%



Source : http://www.icak.or.kr/sta/sta_0101.php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건설통계

주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세계 건설 5강 진입을 위한 건설전문가 5,000명 양성' 중 page 12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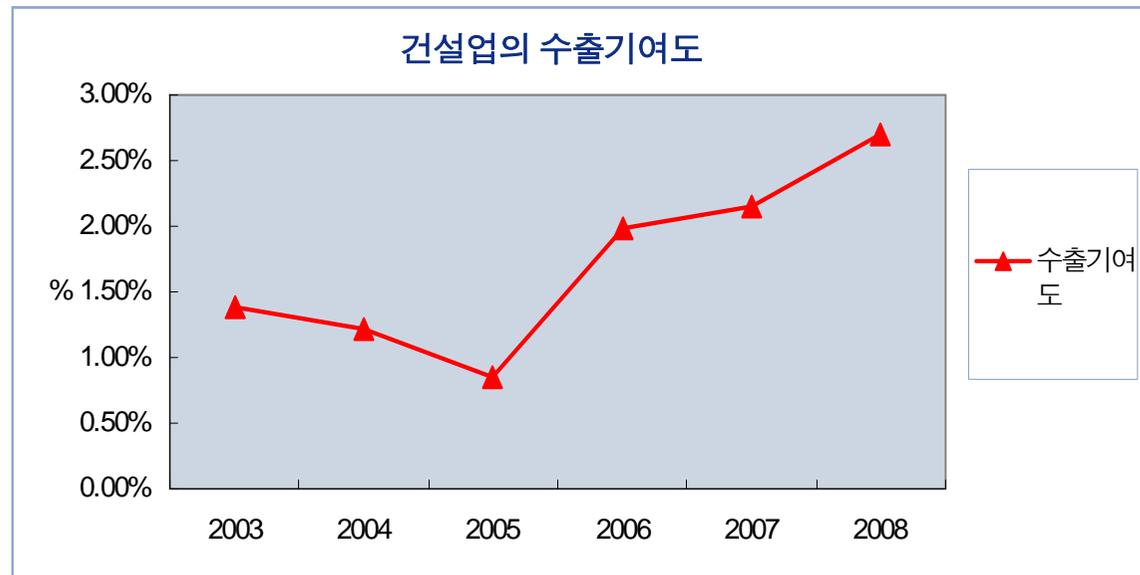
II. 본론

1. 해외건설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3 해외 건설업의 급격한 성장 → 해외건설업의 수출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상승중임.

- 최근 5년간 한국의 수출실적은 매년 연평균 16.84%의 속도로 고속 성장하고 있음.
- 같은 기간,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매출액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33.55%의 성장률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서 전체 수출총액의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외건설업이 전체 수출액에 기여하는 수준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서 거의 3%에 육박함
- 해외 건설업은 이제 한국 경제의 주요 외화획득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연도	수출실적	해외 매출액	수출기여도
2003	193,817	2,686	1.39%
2004	253,845	3,076	1.21%
2005	284,419	2,402	0.84%
2006	325,465	6,453	1.98%
2007	371,489	8,016	2.16%
2008	422,007	11,410	2.70%



Source : 국토해양부 건설정보실 발간 건설관련통계 page 17 건설업의 수출기여도 인용

II. 본론

1. 해외건설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4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해외건설업 ➡ 한국의 해외건설업의 특징점은 아래와 같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해외건설업			
구분	해외 건설업의 특징적 성격		
인력 대체 및 고용창출 효과 & 외화가득 효과	<p>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 수가 증대됨에 따라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p> <p>2008년 상반기 현재 제3국 기술직 인력 고용인원은 4000여명으로 연평균 급여는 미화 6만불 수준임. 이 중 약 50%의 인력을 내국인 기술직으로 대체하는 경우 연간6만불 x 2,000명=1억 2천만불의 외화지출 억제 효과 있음.</p>		
고부가가치 플랜트 사업	<p>플랜트 산업의 경우 보통 단순 시공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운영체제 전수까지 다공정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연관산업 유발효과도 상당함. 이에 따라 1건의 플랜트 사업 수주가 천문학적인 외화획득의 기회가 될 수 있음. 한국은 플랜트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음</p>		
위험 분산효과 & 경영효율성	<p>국내 건설경기 침체시 위험분산 효과가 있으며,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장비 및 유휴인력 등에 대한 운용율을 높일 수 있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함.</p>		
영업이익률 상승	<p>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외건설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국내 건설부문에 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p> <p>➡ 이는 해외 건설시장의 경쟁수준이 국내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가수주의 경향이 있어왔다는 점과, 해외건설업 자체의 리스크로 인해 인건비, 운송비, 보험비 등의 영업비용이 추가발생한다는 산업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p> <p>➡ 그러나, 해외 건설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과거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의 성장추세가 계속될 경우 5년후(2013년)에는 해외부문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p>		
주요 건설사 국내부문 및 해외 건설 부문 영업성과 비교 (단위 : USD)			
	FY2006	FY2007	FY2008
국내부문 영업이익	1,963,206 백만	2,141,992 백만	1,948,516 백만
국내부문 영업이익률	8.80%	8.86%	7.94%
해외 영업이익	214,874 백만	303,744 백만	639,711 백만
해외 영업이익률	4.22%	4.45%	5.38%

Source : DART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국내 상위 10위권 기업 중 6개기업 샘플) 참조

II. 본론

- 2.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 2.1 근로자 개인적 측면
 - 2.2 기업적 측면

II. 본론

2.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2.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 해외건설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과 비과세 연혁

- 국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비과세 소득은 3배 증가하였음(1976년 월 50만원 => 2009년 월 150만원)
- 반면 일반물가는 같은 기간 거의 4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주요 건설사의 임금수준 역시 6배 정도 상승하여서 비과세소득의 증가규모가 물가 및 임금수준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해외건설부문 종사자가 국내건설부문 종사자 대비 수취하는 소득 배수 역시 기존의 2.6배에서 1.7배 수준으로 감소하였는 바, 과거보다 해외건설부문 종사자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소득향상 체감지수는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
- '80년대 초에 해외건설업 종사자의 소득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배경에는 당시 주요외화 획득산업이었던 해외 건설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사회전반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기인한 바가 큼

연도	지수
1980	28.174
1990	51.711
2000	84.866
2005	100.000
2008	109.700

Source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기간	비 과 세 한 도
1976.1~1995.6	월 50 만원
1995.6~1999.12	월 100 만원
2000.1~2006.2	월 150 만원
2006.2~2009 현재	월 100만원 (원양어업, 국외항행선박, 국외건설 150만원)

Source : 해외건설협회 제공 비과세 한도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급여

구분	80년대 초		90년대 초		현재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A사	56	147(2.6배)	119	224(1.9배)	410	692(1.7배)
B사	50	110(2.2배)	110	250(2.3배)	308	523(1.7배)

Source : 해외건설협회제공 국외 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II. 본론

2.1 근로자 개인적인 측면

2.1.1 해외근로의 애로사항 ➡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수주액 상위 100개사의 해외건설 현장 파견 가능성이 있는 직원 중 776명의 표본을 골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구체적인 설문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Millward Brown 미디어리서치'社를 통하여 2009년 12월 8일부터 2009년 12월 18일에 걸쳐 수행하였음.
- 본 설문은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설문자의 기본사항, 해외파견에 대한 내용, 비과세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설문을 통하여 해외 근무의 애로 사항과 비과세 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호 및 해외 근무 지원 의향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음.
- 응답자는 기본 정보를 통해 본 결과 5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한 인원이 65.2%, 해외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가 53.5%, 기술직이 58%를 차지하고 있음.

		(조사 대상 인원수)	%
전체		(776 명)	100.0
건설 업종 사기 간	5년 미만	(264 명)	34.0
	5년~10년 미만	(146 명)	18.8
	10년~15년 미 만	(155 명)	20.0
	15년 이상	(205 명)	26.4
	무응답	(6 명)	0.8
해외 근무 경력	있다	(415 명)	53.5
	없다	(360 명)	46.4
	무응답	(1 명)	0.1
업무 종류	관리직	(323 명)	41.6
	기술직	(450 명)	58.0
	무응답	(3 명)	0.4

II. 본론

2.1 근로자 개인적인 측면

2.1.1 해외근로의 애로사항 ➡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요약

1

다수가 해외 건설현장 근무 지원 의사가 있음

- 24.6%가 해외 건설현장 근무 지원 의사가 ‘매우 많다’고 응답. 48.7%는 ‘다소 있다’고 응답.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지원 의사가 있었음.
- 지원의사는 건설업 종사기간이 길고 급여가 많을수록 강했고, 해외근무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강했음.
- 지원의사가 강할수록 희망 근로 기간도 길었음.

2

현 비과세혜택 수준 높여야

- 현 150만원 한도인 현 비과세 수준이 해외근무 지원 결정 시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62.4%) 였으며, 응답자의 대다수인 84.3%가 현 비과세 혜택 한도를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의 다수가 현재의 비과세 혜택 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3

비과세혜택 한도 상향 시 해외 근무지원 촉진에 기여할 것

- 근로자들은 월 300~400만원(33.3%)과 500만원 이상(30.2%)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적어도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의 한도 상승을 희망하고 있음.
- 또한 근로자 스스로, 한도를 높일 경우 해외 건설현장 근무 지원 촉진에 ‘기여할 것’ (72.9%)이라고 응답해,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경우 해외 근무 지원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I. 본론

2.1 근로자 개인적인 측면

2.1.1 해외근로의 애로사항

➡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 1. 해외 건설현장 근무 지원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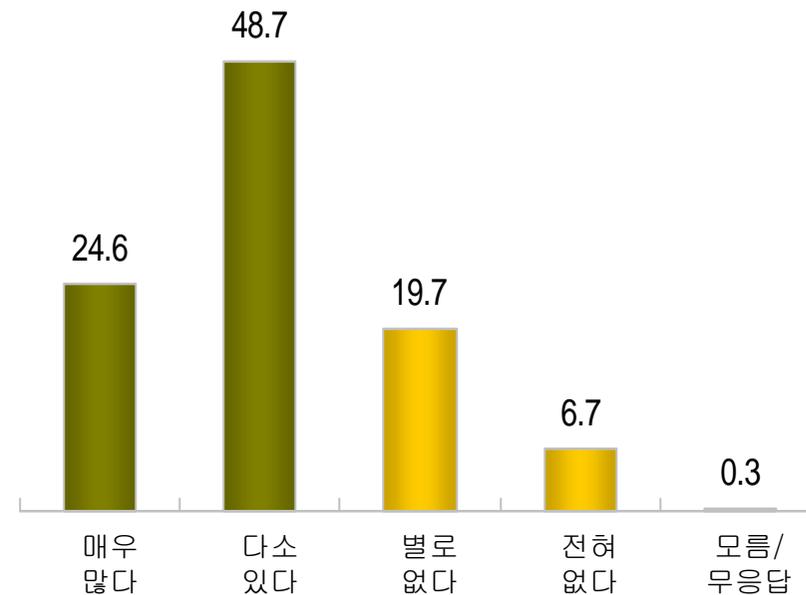
→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지원할 의사가 '있다' (매우: 24.6%+ 다소: 48.7%)는 73.3%, '없다'(별로: 19.7% + 전혀: 6.7%)는 26.4%로 나타나, 기회가 주어지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음. 주1)

→ 기회가 주어지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으므로 근로자들은 해외근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잠재적 지원인력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해외근무 인력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는 바, 근로자들이 현실적인 여건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해외근무 지원의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주1)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n=776, 단위: %)



해외 건설현장 근무 지원 의사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2.1 근로자 개인적인 측면

2.1.1 해외근로의 애로사항

☞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 2. 해외파견 근무장점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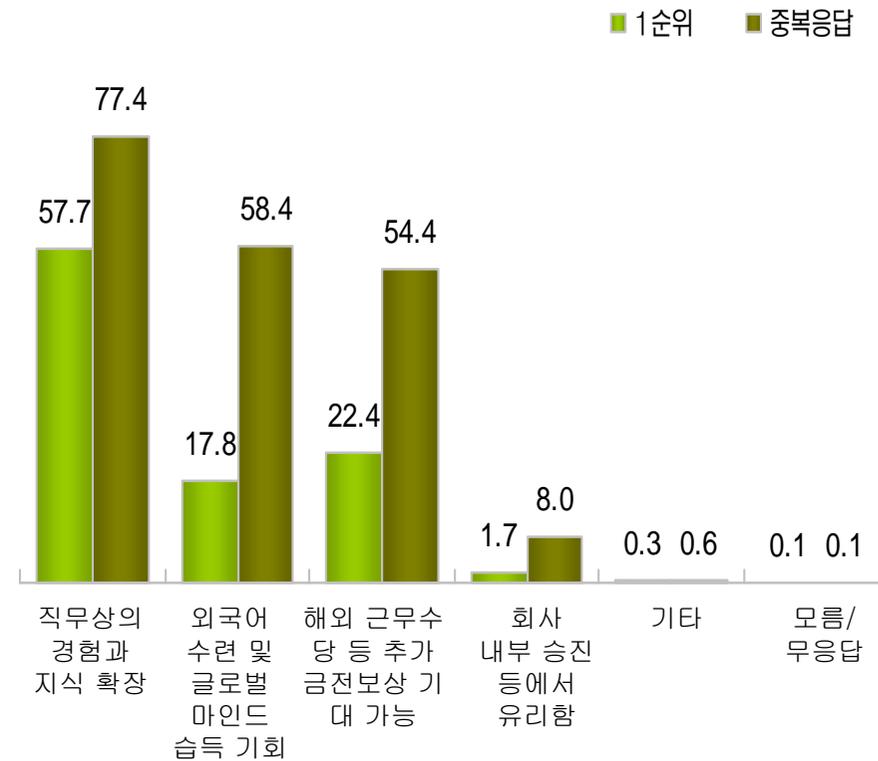
→ 근로자들은 해외파견 근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직무상의 경험과 지식 확장'(77.4%)을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외국어 수련 및 글로벌 마인드 습득 기회'(58.4%), '해외 근무수당 등 추가적인 금전보상 기대할 수 있음'(5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1)

→ 해외근무 경험자는 '추가적인 금전보상 기대'(59.0%)를, 무경험자는 '외국어 수련 및 글로벌 마인드 습득 기회'(65.3%)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음. 주1)

→ 해외근무 경험자의 경우 '추가적인 금전보상 기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기본적으로 해외 근무시 금전적인 보상이 더 큼을 짐작할 수 있음.

주1)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n=776, 단위: %)



해외파견 근무장점 (중복응답)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2.1 근로자 개인적인 측면

2.1.1 해외근로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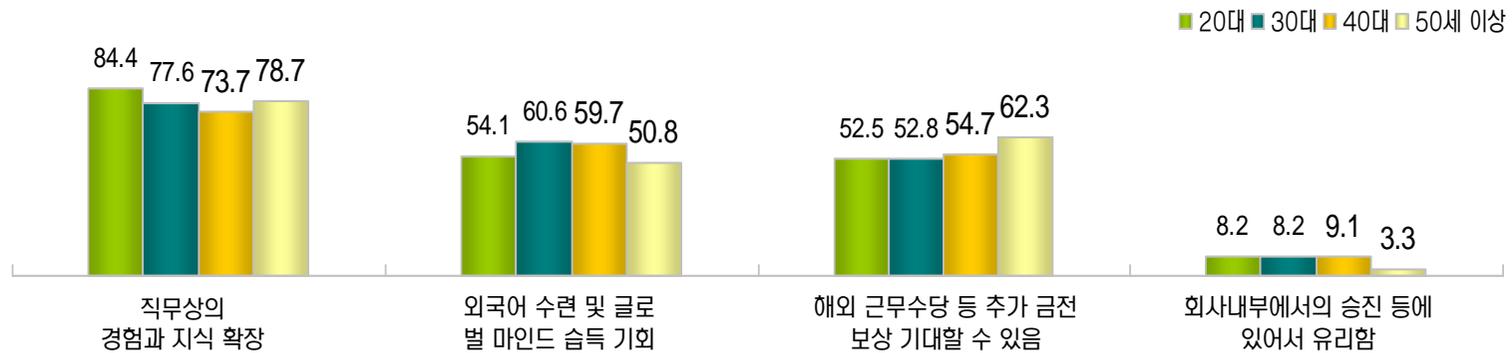
☞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 2. 해외파견 근무의 장점 (계속)_연령대별 분석

→ 세대를 불문하고 해외파견의 근무장점에 대한 답변으로 ‘직무상의 경험과 지식확장’, ‘외국어 수련 및 글로벌 마인드 습득기회’, ‘해외근무수당 기대’ 라는 답변이 각각 순차적으로 선호됨. 다만, 20대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서 직무상의 경험 확장 요인을 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30~40대의 경우 외국어 수련의 동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5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더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출처)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해외파견 근무 장점 : 연령대별 분석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2.1 근로자 개인적인 측면

2.1.1 해외근로의 애로사항

➡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3. 해외파견 근무시 애로점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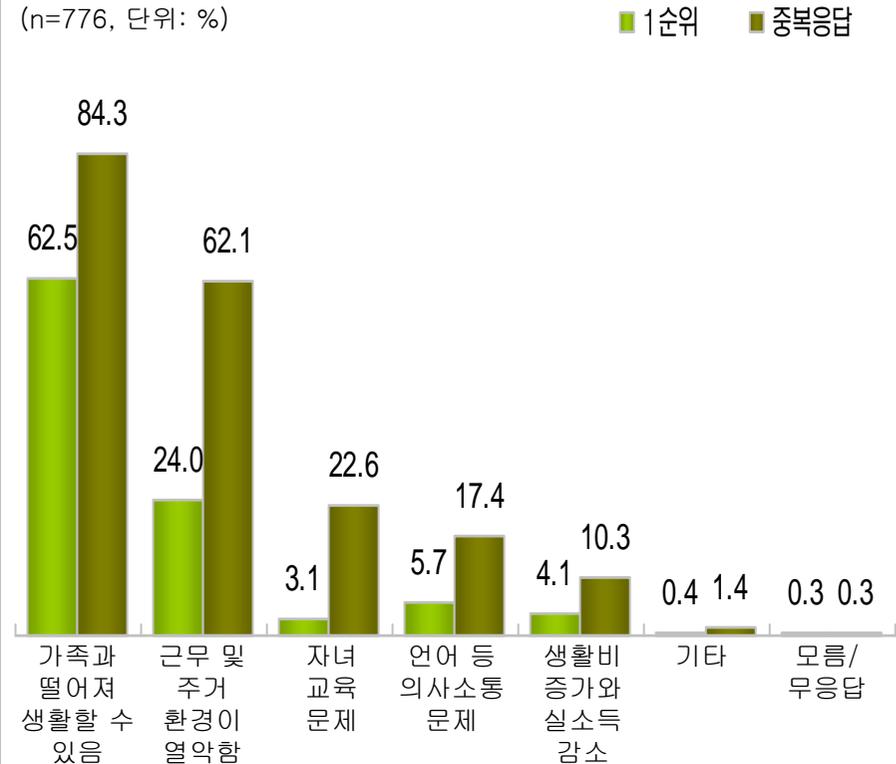
→ 해외파견 근무 시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할 수 있음’이 8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근무 및 주거 환경이 열악함’(62.1%)이었음. 그밖에 ‘자녀 교육 문제가 발생함’(22.6%), ‘언어 등 의사소통의 문제’(17.4%), ‘재정적 문제’(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1)

→ 해외근무 경험자나 무경험자 모두 ‘가족’과 ‘환경’을 주로 꼽았음. 주1)

→ 동 질문사항에서는 생활비 증가와 실소득 감소로 인한 재정적 문제는 1순위 응답에서 4위, 중복응답에서 5위에 머물렀음. 따라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점, 근무 및 주거 환경의 열악함(해외공사의 대부분은 오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음), 자녀 교육문제, 언어 등 의사소통 문제 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주1)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n=776, 단위: %)



해외파견 근무시 애로점 (중복응답)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2.1 근로자 개인적인 측면

2.1.1 해외근로의 애로사항

☞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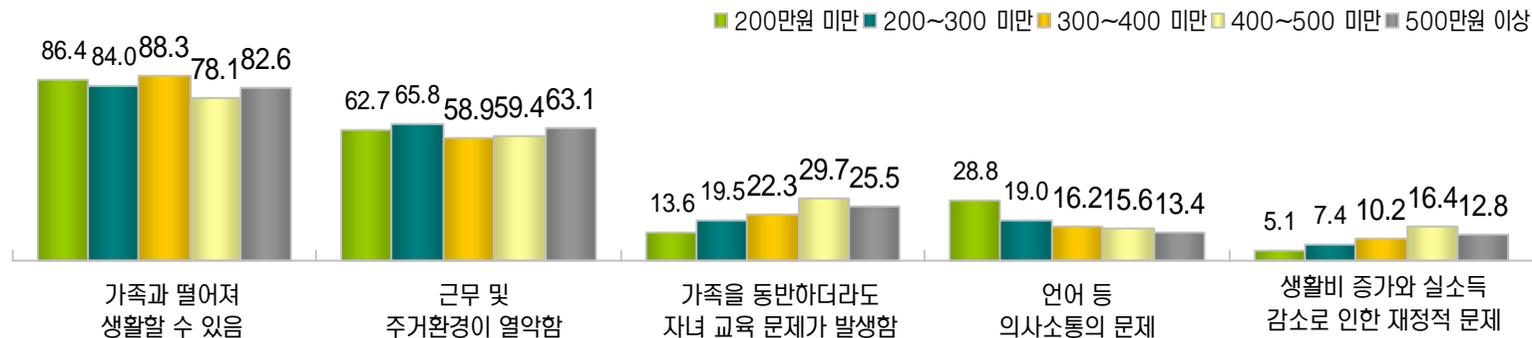
■ 3. 해외파견 애로사항 (계속)_소득대별 분석

→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불편함이라든지 근무/주거환경의 열악함은 모든 소득수준에 걸쳐서, 해외 파견근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답변되었음.

→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동반자녀의 교육문제와 재정적 문제에 대해 좀 더 걱정하였으며, 언어 등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더 많은 애로점으로 지적되었음.

출처)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해외파견 애로사항: 소득대별 분석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2.1 근로자 개인적인 측면

2.1.2 비과세 제도와 해외근무 자원 의향 ➔ 설문결과 중 비과세 한도 증가시 해외근무 자원의향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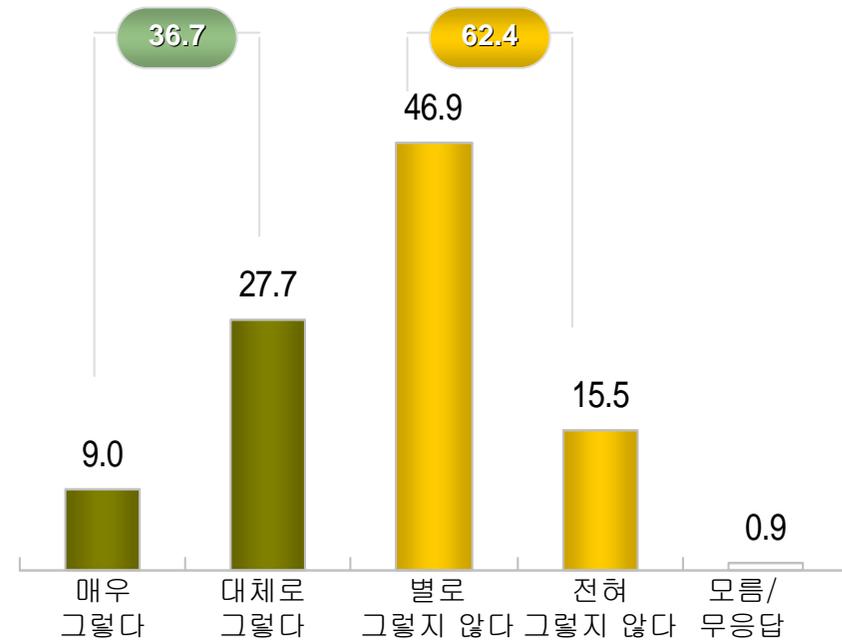
1. 해외근무 지원 결정 시 현 비과세혜택수준의 결정 영향 여부

→ 월 150만원의 한도인 현 비과세혜택 수준이 해외현장 근무 지원을 결정할 때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물어본 결과, ‘그렇다’(매우: 9.0% + 대체로: 27.7%)는 응답은 36.7%, ‘그렇지 않다’(별로: 46.9% + 전혀: 15.5%)는 응답은 62.4%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은 해외근무 지원 결정 시 비과세혜택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타남. 대부분의 계층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수였음. 주1)

→ 현재 월 150만원의 비과세는 앞서 보여준 자료와 같이 과거에는 물가 및 급여 수준에 비추어 큰 혜택이었으나 현재는 물가 및 급여 수준에 비추어 그 혜택의 크기가 작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함. 위 설문 결과도 이러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주1)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n=776, 단위: %)



해외근무 지원 결정시 현 비과세 혜택수준의 결정 영향여부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2.1 근로자 개인적인 측면

2.1.2 비과세 제도와 해외근무 자원 의향 ➔ 설문 결과 중 비과세 한도 증가 시 해외근무 자원 의향에 대한 분석

■ 2. 현 근로소득 비과세혜택 한도에 대한 견해

→ 현재 월150만원인 근로소득 비과세혜택 한도에 대해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84.3%로 압도적이었음. 특히 건설업 종사기간 15년이상(91.2%), 월평균 급여가 높을수록, 해외근무 지원의사가 높은 층(90.6%)일수록 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았음. 주1)

→ 비과세혜택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 (n=679) 에게 바람직한 비과세혜택 수준을 물은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가 월300~400만원(33.3%) 또는 월500만원이상(30.2%)을 꼽았음.

500만원이상은 종사기간 10년이상, 해외근무 경험자, 해외근무 적극 지원 의사 층에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많았음. 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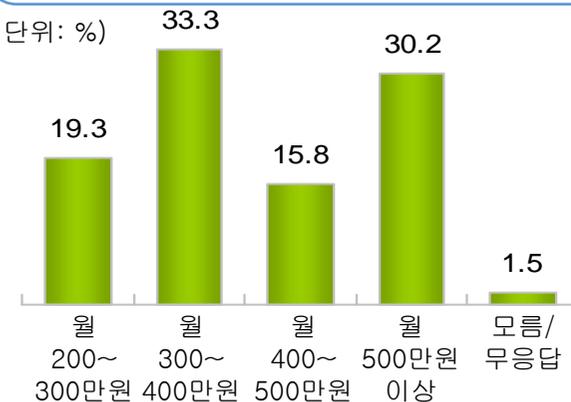
주1)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n=776, 단위: %)



바람직한 근로소득 비과세혜택 수준 질문

(n=679, 단위: %)



현 근로소득 비과세혜택 한도에 대한 견해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2.1 근로자 개인적인 측면

2.1.2 비과세 제도와 해외근무 자원 의향 → 설문 결과 중 비과세 한도 증가 시 해외근무 자원 의향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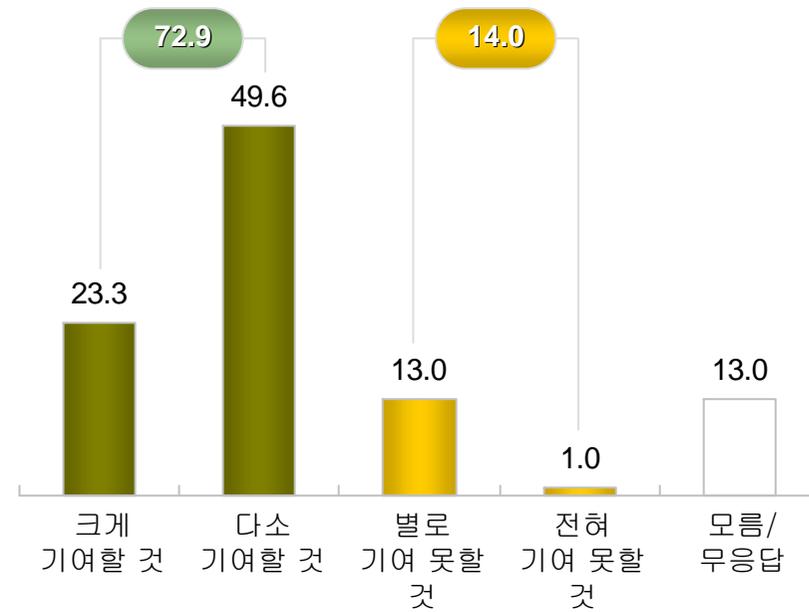
■ 3.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한도 상승 시 근무지원 촉진 기여도

→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지금보다 높일 경우 해외 건설현장 근무 지원 촉진에 ‘기여할 것’(크게: 23.3% + 다소: 49.6%)이라는 응답은 72.9%, ‘기여 못할 것’(별로: 13.0% + 전혀: 1.0%)이라는 응답은 14.0%로 나타나,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비과세혜택 한도 증액 시 해외근무 지원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주1)

→ 모든 계층에서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50세 이상 (85.2%), 종사기간 15년 이상 (82.4%), 월평균급여 500만원이상 (84.6%)에서 특히 높았음. 주1)

주1)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n=776, 단위: %)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한도 상향 조정 시 근무지원 촉진 기여도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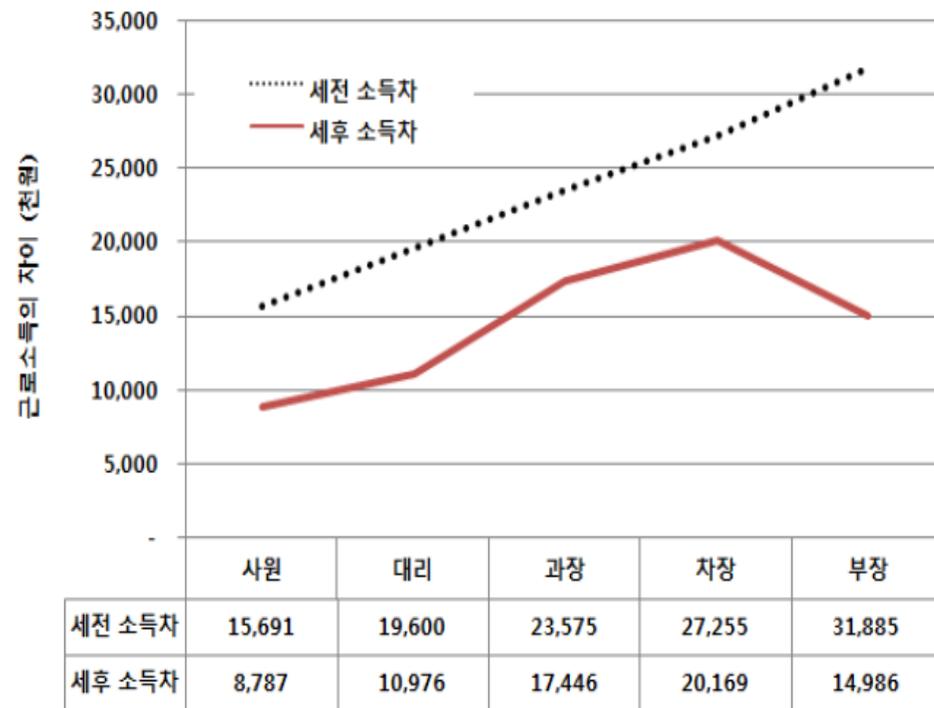
2.1 근로자 개인적인 측면

2.1.3 소득세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

➡ 누진적인 소득세로 인하여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함

- 우측 그래프는 국내건설업 종사자와 해외건설현장 파견근로자간에 각 직급별로 세전/세후 소득차이를 분석한 자료임.
- 해외파견자에 대한 수당 중 월 150만원까지 면세됨에도 불구하고 <그림 4>와 같이 소득누진세로 인해 경력 15년차 차장급(3인가족 기준)의 경우 실질 수령액은 74%에 불과한 실정임. 주1)
- 실질 수령액이 표면금액의 74%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부동산 값과 생필품 폭등 등으로 생활비 지출은 국내에서보다 훨씬 크게 지출이 늘어나는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음. 주1)
- 해외 건설현장에서 국내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력자는 실무 경력 10~15년차 경력자로 일반 기업의 과장, 차장급들임. 이들에게 금전적 손실액을 보전해주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해외근무 의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해외수당 누진세로 인한 실제 소득차이⁸⁾



Source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공급 부족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page 13 그림 4 인용

주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공급 부족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중 인용

II. 본론

2.2 기업적 측면

2.2.1 기업측면에서의 애로사항 ➔ 임원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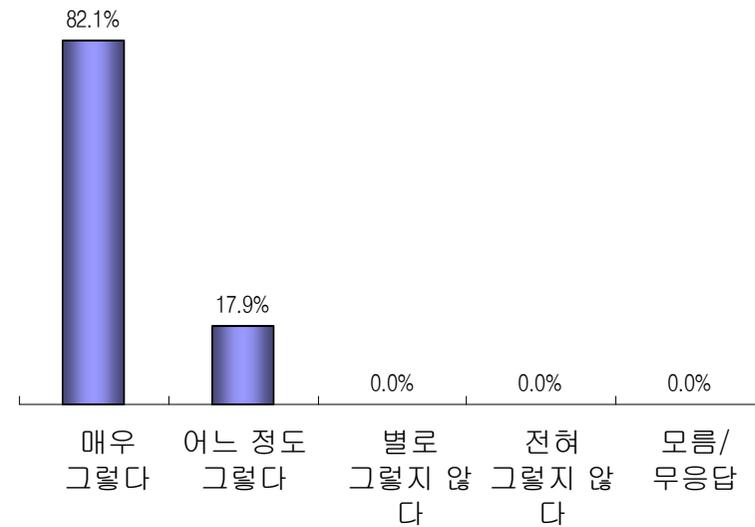
■ 기업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건설 수주액 상위 100개사의 임원에게 설문을 발송하여 응답한 28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1. 전문적인 해외 건설인력의 존재가 해외 건설공사의 수주 및 사업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가?

→ 82.1%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고 어느 정도 그렇다는 응답 또한 17.9%로 모든 응답자가 건설인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음.

→ 건설업의 특성상 전문건설 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모든 임원들이 공유하고 있음.

(n=28, 단위: %)



전문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존재가 공사 수주 및 사업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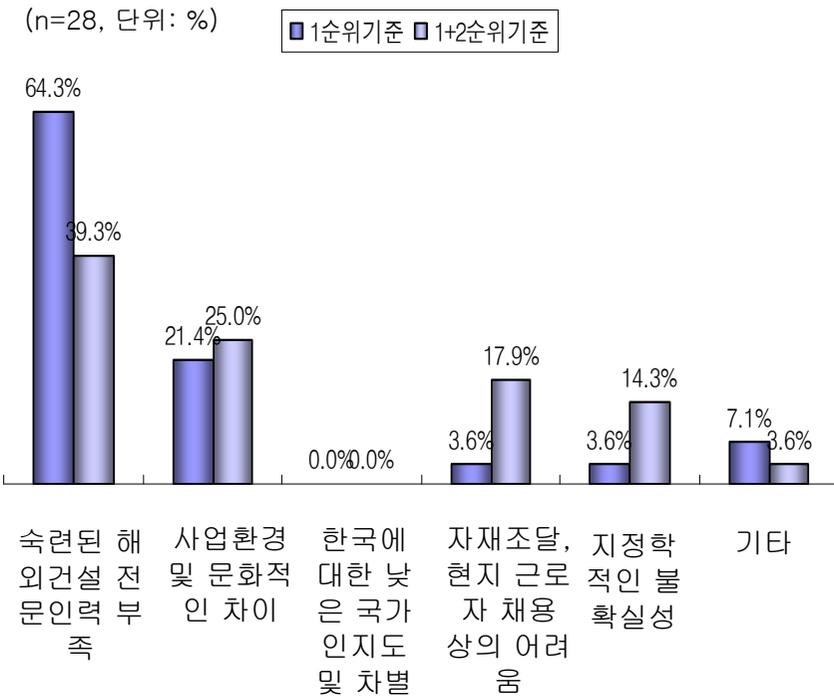
II. 본론

2.2 기업적 측면

2.2.1 기업측면에서의 애로사항 ➔ 임원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

■ 2. 해외 건설 현장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

- 1순위, 1+2순위 모두 속련된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함.
- 또한 사업환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업관계 구축의 어려움을 2번째로 지적함.
- 반면, 한국에 대한 낮은 인지도나 자재조달 등으로 인한 실무적인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중을 차지함
- 단순히 해외건설현장 근무 자원자의 수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적절한 경험과 관리역량을 갖춘 간부급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음
-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건설관리 기술을 갖춘 건설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시사



해외 건설현장의 운용 애로점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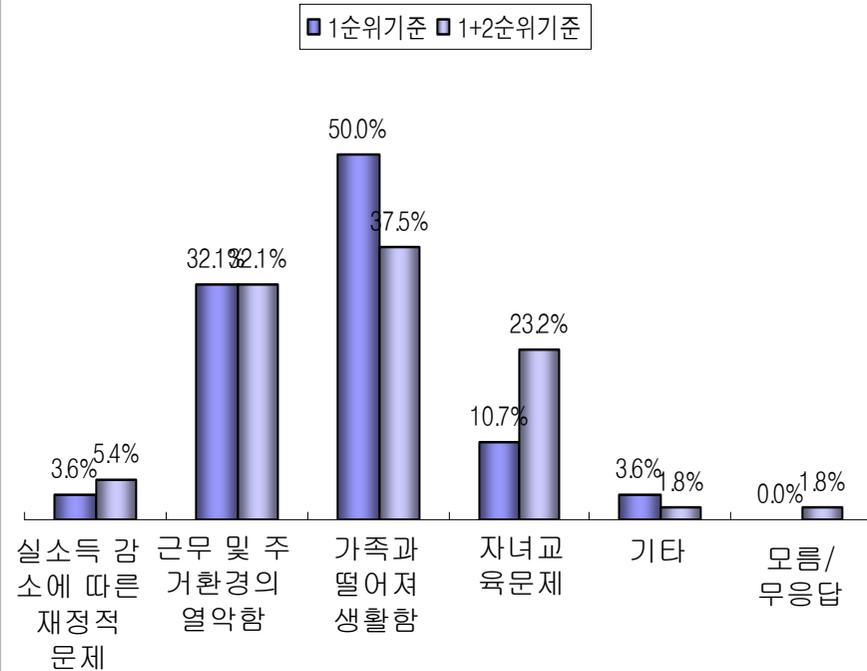
2.2 기업적 측면

2.2.1 기업측면에서의 애로사항 ◀ 임원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

■ 3. 임직원들이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호소하는 가장 큰 애로점

- 1순위, 1+2순위 모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음. 이는 임원, 근로자 모두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 2순위로 근무 및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함
- 임원급과 직원급 모두 해외건설현장 근무의 가장 큰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가족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임.

(n=28, 단위: %)



해외건설현장 근무 임직원의 애로점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2.2 기업적 측면

2.2.2 비과세 제도와 기업의 재정부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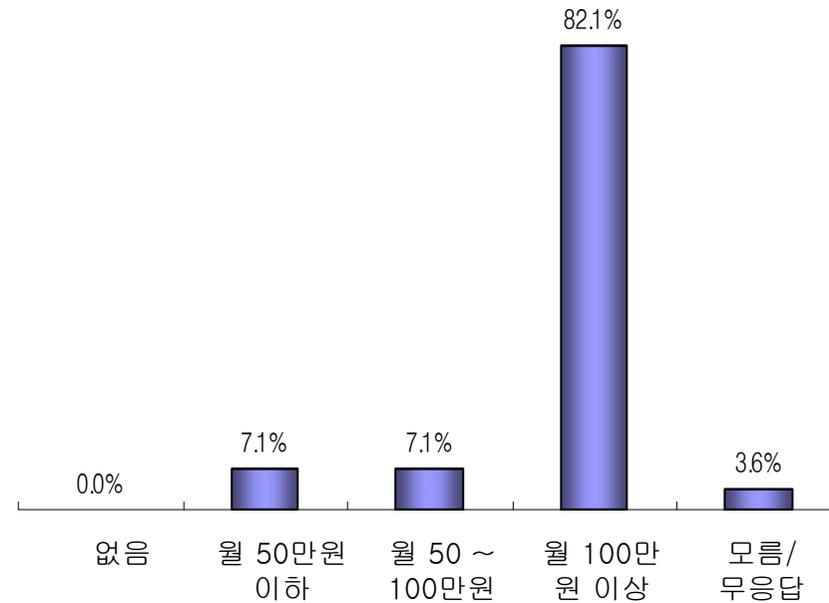
➡ 임원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

- 1. 해외건설현장 근무지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귀사는 현재 해외파견 근로자 1인당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각종 수당, 생활지원금, 보조금 포함)

→ 전체 응답의 82.1%가 월 1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함.

→ 많은 기업들이 월 100만원 이상의 높은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전문적인 해외건설 인력을 양성할 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음

(n=28, 단위: %)



해외파견 근로자 1인당 평균 지원액
혹은 지원계획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2.2 기업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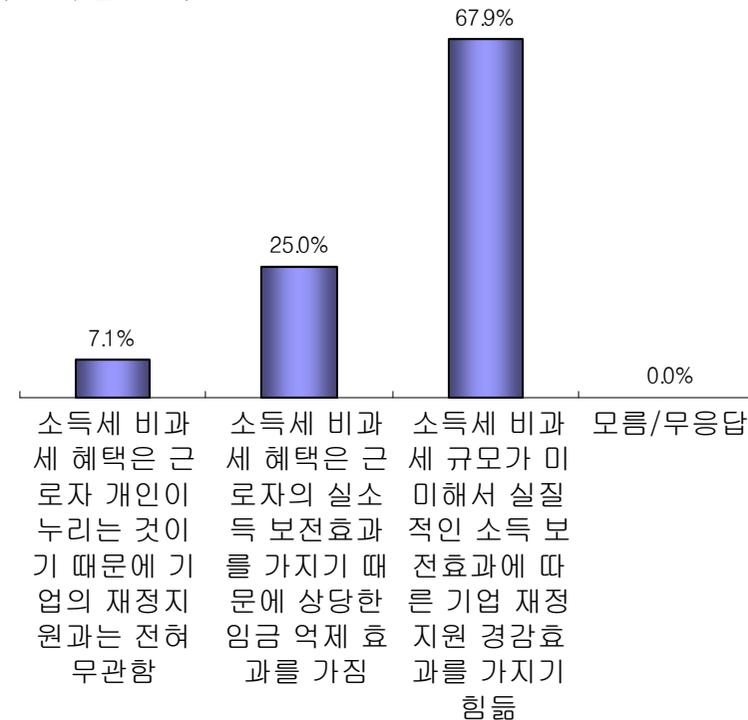
2.2.2 비과세 제도와 기업의 재정부담 감소

☞ 임원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

- 2. 귀사는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월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혜택(연소득 5천만원 기준, 월 30만원 절세효과)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전체 응답의 67.9%가 비과세 규모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효과에 따른 기업 재정지원 경감효과를 가지기 힘들다고 응답함.

(n=28, 단위: %)



현행 비과세 혜택이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2.2 기업적 측면

2.2.3 기업에서 바라는 적정 비과세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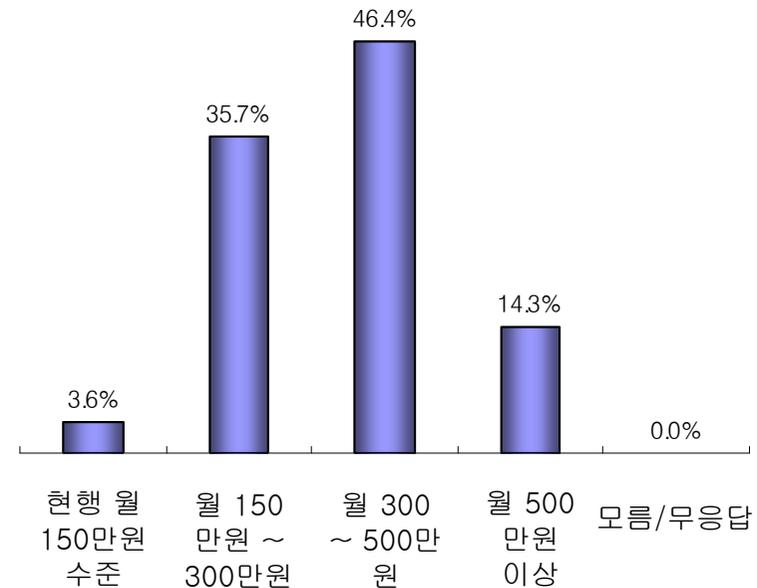
☞ 임원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

- 1. 귀사는 소득세법상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혜택이 기업의 실질적인 재정부담 경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비과세혜택의 범위가 최소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의 46.4%가 월300 ~ 500만원을 응답함

→ 이 구간의 절세효과가 월 60 ~ 100만원임을 볼 때 기업이 해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평균 월 100만원의 재정부담액이 절세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월 500만원의 비과세혜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n=28, 단위: %)



실질적인 재정부담 경감으로 연결되기 위한 비과세혜택의 범위

Source :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II. 본론

3. 비과세 금액 확대시 정부 세수 변동 추정

3.1 비과세 금액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3.2 해외 건설업의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효과

3.3 세수 증감효과 종합 분석

II. 본론

3. 비과세 소득 금액 상향 조정 시 정부 세수 변동 추정

3.1 세수감소 효과 ;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직능별 평균 급여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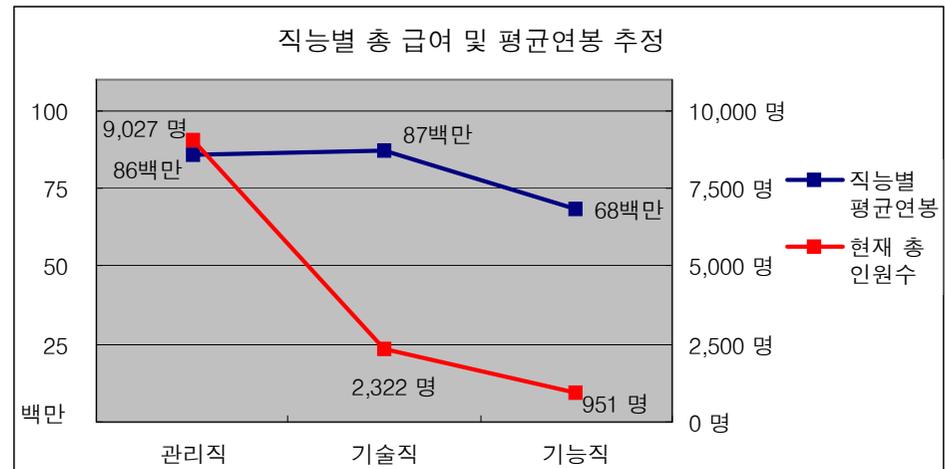
- 2009년 말 현재 99개 건설사의 해외소재 사업장의 직능별 표준 임를치를 평균 적용하여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연간 총 급여 및 직능별 평균급여를 산출하여 보면 68~87백만원 수준임.
(직능별 평균급여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임)

- 2009년말 현재 해외소재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는 1만2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직능별로는 관리직이 73%로 제일 많고, 기술직과 기능직이 각각 19%, 8%의 비율을 점하고 있음.

- 직급별로는 제반 수당급여 포함 시, 경력5년 이하의 대리급이 평균 64백만원을, 경력10년 이하인 부장급이 91백만원, 그리고 임원급이 평균 113백만원을 수취하고 있음

주) 상기 자료는 해외건설협회가 소속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직급별, 직능별 급여기준표에 근거한 것임

	직능별 총 급여	현재 총 인원수	직능별 평균연봉
관리직	774,925 백만	9,027 명	85,845,256
기술직	202,539 백만	2,322 명	87,226,311
기능직	65,019 백만	951 명	68,369,467
계	1,042,484 백만	12,300 명	



II. 본론

3. 비과세 소득 금액 상향 조정 시 정부 세수 변동 추정

3.1 세수감소 효과 ; 비과세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 부담 차이(표준 근로자 기준)

- 해외소재 사업장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금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와 현행 150만원인 경우 그리고 각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비과세소득을 상향조정하였을 경우, 직능별 표준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연간 비과세소득 증가액만큼 커지게 됨. 예컨대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비과세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연간 3600만원(300 x 12개월)의 소득세 과세표준 감소효과가 있음
- 소득세는 소득구간별 누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 결정세액 산출 시, 근로자의 평균연봉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과세 소득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액감소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남

직능별 인당 과세표준 도출		근로자 1인당 소득세 과세표준_비과세 소득금액별 (단위: 원)					
	직능별 평균연봉	비과세無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관리직	85,845,256	75,845,256	57,845,256	51,845,256	39,845,256	27,845,256	15,845,256
기술직	87,226,311	77,226,311	59,226,311	53,226,311	41,226,311	29,226,311	17,226,311
기능직	68,369,467	58,369,467	40,369,467	34,369,467	22,369,467	10,369,467	-

주) 표준근로자의 종합소득 공제액은 직능을 불문하고 4인가족 기준 1천만원 상당액이라고 가정하였음. 외화기준 급여의 원화환산은 2009년 기중평균환율 사용하였음

직능별 인당 결정세액		근로소득세액 공제 적용 후 소득세 결정세액(주민세 포함)_비과세 소득금액별 (단위: 원)					
		비과세無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관리직		9,859,303	6,532,903	5,424,103	3,633,027	2,247,027	861,027
기술직		10,114,522	6,788,122	5,679,322	3,792,539	2,406,539	1,020,539
기능직		6,629,777	3,693,573	3,000,573	1,614,573	341,569	-

주) 소득세 결정세액은 09년말 현재 소득세법 제55조에서 2010년 이후 소득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누진세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임. 소득할 주민세도 포함된 것임

II. 본문

3. 비과세 소득 금액 상향 조정 시 정부 세수 변동 추정

3.1 세수감소 효과 ; 향후 해외건설업 소요인력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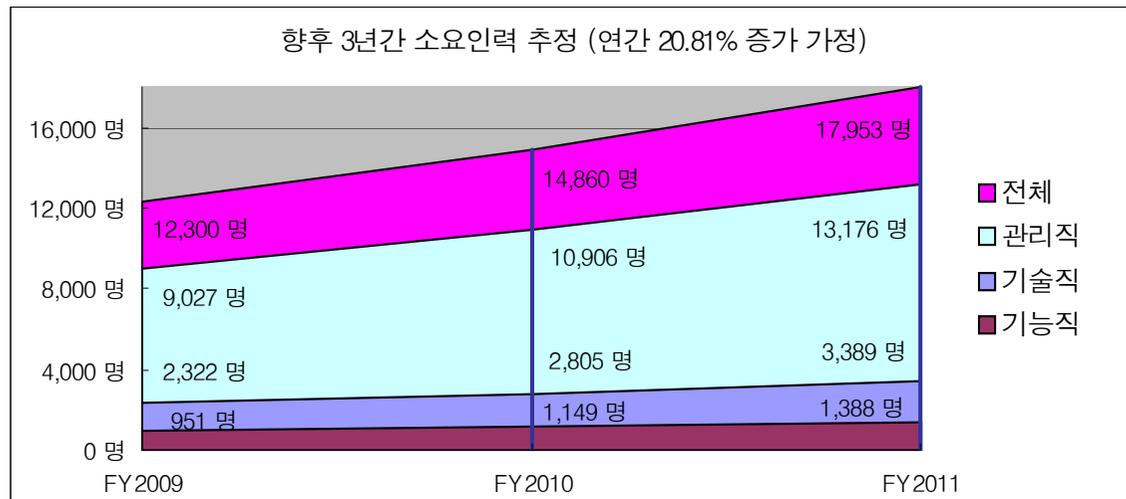
- 해외건설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건설업체 중 향후 3년간 추가 필요인력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향후 3년간 현재 고용인력(5,025명)의 76%에 상당하는 인력(3,836명)이 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연평균 20.81%의 고용증가율을 의미하는 것임.

인력 수요 조사	인원수
현재 인원	5,025 명
3년후 추가 소요인력	3,836 명
예상 성장율	20.81%

- 해외건설협회의 Survey결과에 따라 연평균 20.81%의 고용 증가율을 가정 시에 2011년말 현재 해외건설부문에 종사하게 되는 예상 고용 인력수는 대략 1만 8천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됨.

주) 직능별 인원 구성비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

향후 3년간 소요인력 추정 (연간 20.81% 증가 예상)				(단위 : 원)
	FY2009	FY2010	FY2011	연평균
관리직	9,027 명	10,906 명	13,176 명	11,036 명
기술직	2,322 명	2,805 명	3,389 명	2,839 명
기능직	951 명	1,149 명	1,388 명	1,163 명
전체	12,300 명	14,860 명	17,953 명	15,038 명



II. 본론

3. 비과세 소득 금액 상향 조정 시 정부 세수 변동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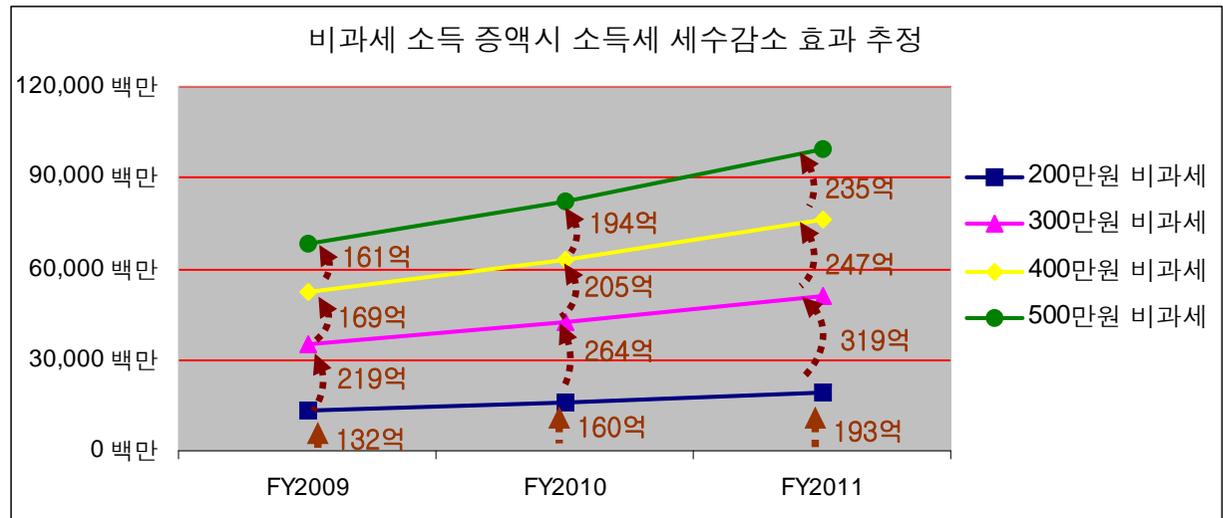
3.1 세수감소 효과 ; 비과세 소득금액 증액시 소득세 세수감소 효과 추정

- 해외건설현장 종사 근로자의 증가속도를 감안할 경우 비과세 소득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시에 전체 해외건설부문 근로자의 소득세 절감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는 아래와 같음. 가장 보수적인 경우(500만원 비과세)에 2011년 무렵 소득세 세수 감소규모는 994억원 수준임

- 매년 고용 인원수가 증가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비과세소득 수준에서 연도가 지날수록 세수감소 효과는 더 커짐
- 비과세소득 금액이 클수록 연도별 세수감소효과가 보다 가파르게 증가함

주) 상기 분석자료는 직능별 평균급여를 수취하는 표준근로자를 가정하여 도출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세수감소효과와 다를 수 있음

비과세 금액	FY2009	FY2010	FY2011
200만원 비과세	13,243 백만	15,999 백만	19,329 백만
300만원 비과세	35,110 백만	42,418 백만	51,246 백만
400만원 비과세	52,050 백만	62,884 백만	75,972 백만
500만원 비과세	68,105 백만	82,280 백만	99,405 백만



II. 본론

3. 비과세 소득 금액 상향 조정 시 정부 세수 변동 추정

3.2 세수증대 효과 ; 해외부문 매출액 성장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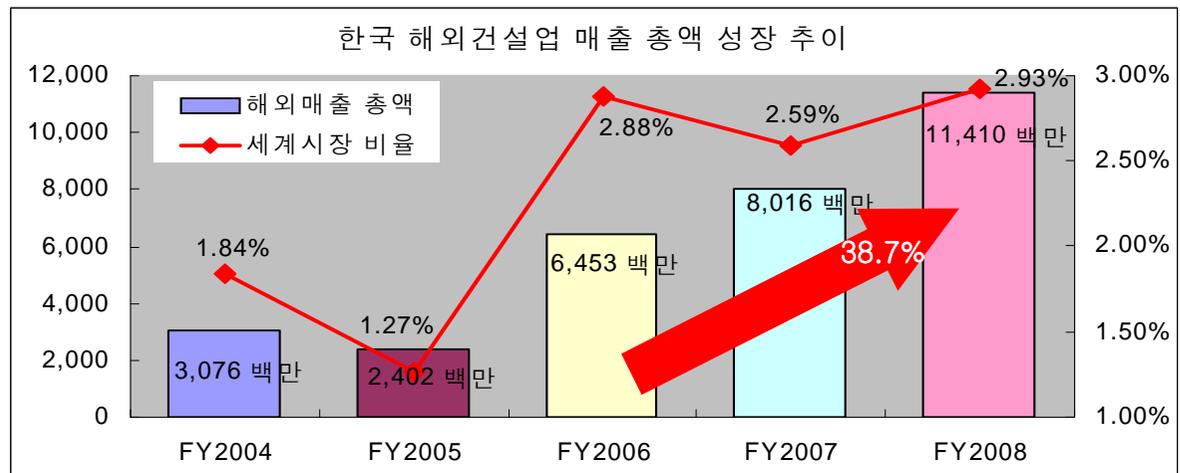
- 한국이 해외부문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 급격히 성장하였음. 금액기준으로 '04년 3,076백만원 수준에서 '08년 11,410백만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연간 매출액 신장률은 38.7%에 달하고 있음.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국제 건설시장 매출총액의 연간 성장률 수준(23.58%)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것임
- ENR Report에 따르면 전세계 국제 건설부문 시장에서 매출액 대비 한국 건설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여 '08년 현재 전체 시장수요의 3%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최근 한국업체들의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고려할 경우 '09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은 가파른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증가기조만을 적용하더라도 2011년 현재 국내건설업체들의 해외부문 매출액 규모는 USD 3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 해외 건설업 매출액 성장 추이					(단위 : USD)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해외매출 총액	3,076 백만	2,402 백만	6,453 백만	8,016 백만	11,410 백만
세계시장 비율	1.84%	1.27%	2.88%	2.59%	2.93%
직전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38.78%				

(Source : The analysis of ENR 2007,2008,2009 Top 225 International and Global Contractors)



II. 본론

3. 비과세 소득 금액 상향 조정 시 정부 세수 변동 추정

3.2 세수증대 효과 ; 해외부문 영업이익률 증가추이 분석

- 해외건설부문 주요업체들이 최근 3년간 해외 건설부문에서 발생시킨 영업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국내건설부문 영업이익률의 하강기조 (산업평균 8.8%⇒7.94%)와 달리 추세적으로 뚜렷한 상승기조(산업평균 4.22 ⇒5.38%)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국내업체들이 수주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성격이 기존의 토목위주 사업에서 플랜트, 첨단구조물 건설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줌.

주요 건설사 해외부문 영업이익률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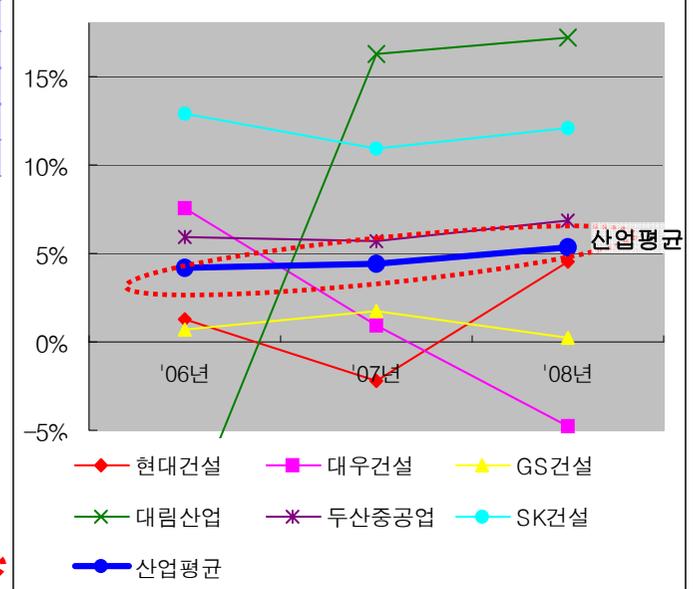
년도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SK건설	산업평균
'06년	1.32%	7.55%	0.65%	-10.35%	5.94%	12.88%	4.22%
'07년	-2.25%	0.89%	1.71%	16.25%	5.67%	10.87%	4.45%
'08년	4.51%	-4.78%	0.27%	17.16%	6.87%	12.06%	5.38%
업체평균	1.19%	1.22%	0.88%	7.69%	6.16%	11.94%	4.68%

-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업체의 해외부문 영업이익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직전3년간 해외부문 산업평균 영업이익률의 연간 성장율은 12.92%에 달함

주요 건설사 해외 건설 부문 실적 추이 (단위 : USD)

	FY2006	FY2007	FY2008
주요 건설사 해외매출액	5,093,973 백만	6,825,661 백만	11,893,243 백만
해외 영업이익	214,874 백만	303,744 백만	639,711 백만
해외 영업이익률	4.22%	4.45%	5.38%
직전 3년 평균 영업이익률 증가율	→		12.92%

주요 건설사 영업이익률 증가추이



II. 본론

3. 비과세 소득 금액 상향 조정 시 정부 세수 변동 추정

3.2 세수증대 효과 ; 해외 건설부문의 향후 법인세 증가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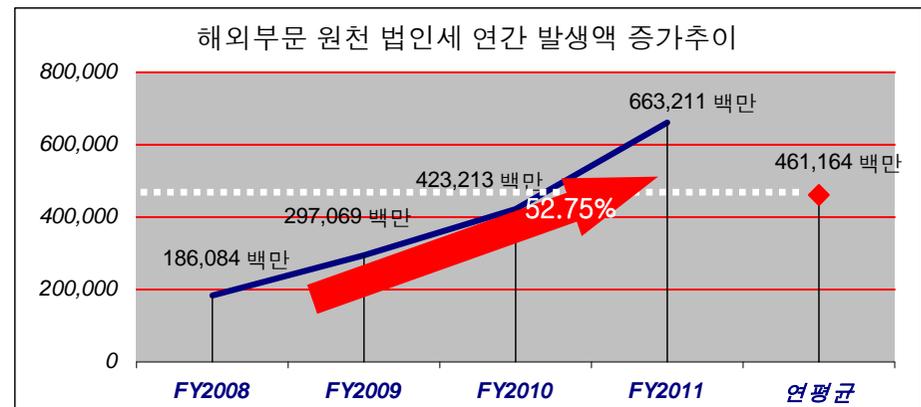
- 국내업체들의 해외부문 매출액 성장수준(연38.78%)과 영업이익률 증가추이(12.92%)를 적용하였을 경우, 향후 3년간('09년 포함) 해외건설부문을 원천으로 하는 법인세 발생액은 연평균 52.75%씩 증가하여 2011년 무렵에는 2008년 대비 무려 3배 넘는 법인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186,084백만원 → 663,211백만원)
 이는 동 부문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4,600억원 이상의 법인세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해외매출액(USD)	영업이익율	영업이익(USD)	영업이익(KRW)	한계세율	법인세액(KRW)	비고
FY2008	11,410 백만	5.38%	614 백만	676,668 백만	27.5%	186,084 백만	실제 발생액
FY2009	15,834 백만	6.07%	962 백만	1,227,558 백만	24.2%	297,069 백만	연평균 52.75% 증가 추정
FY2010	21,974 백만	6.86%	1,507 백만	1,923,694 백만	22%	423,213 백만	추정
FY2011	30,495 백만	7.74%	2,362 백만	3,014,597 백만	22%	663,211 백만	추정
연평균	22,768 백만	6.51%	1,610 백만	2,055,283 백만		461,164 백만	

(주: 법인세 한계세율은 2009년 12월 초 현재 시행중인 법인세법 상의 2억원 이상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법인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동 세율은 변경될 수 있음. 또한 한계세율에는 surtax인 주민세(법인세 발생액의 10%)를 포함시켰음)

- '08년 대비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 발생액을 평균하여 보면 연간 2,751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음

2008년 대비 법인세 연간 추가 발생액 추이		(단위: KRW)
FY2009	추가발생 법인세	110,985 백만
FY2010	추가발생 법인세	237,129 백만
FY2011	추가발생 법인세	477,128 백만
연평균	추가발생 법인세	275,081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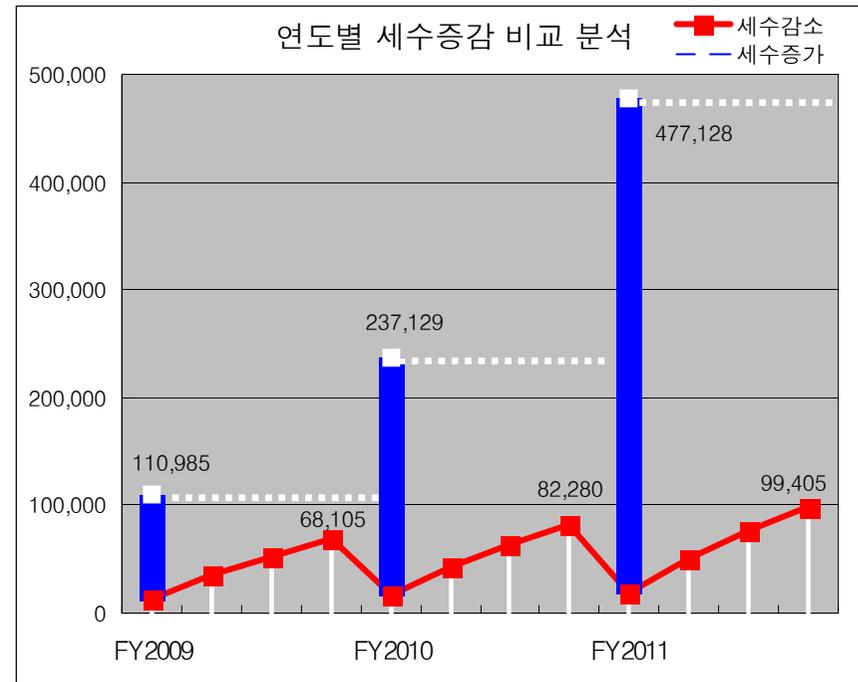
II. 본론

3. 비과세 소득 금액 상향 조정 시 정부 세수 변동 추정

3.3 세수증감 종합 ; 세수감소 및 세수증대 효과 종합비교

- 연도별로 세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여 해외부문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속도는 연성장을 107.34%에 달하여서 비과세소득 증대 시 개인소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소 속도(20.81%)를 압도하고 있음. 가장 보수적인 기준(500만원 비과세소득 가정)을 적용하더라도 2011년 무렵에 소득세가 감소하는 수준은 현행 150만원 기준에 비해 연간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는 무려 4,771억원이 순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년도	비과세금액	세수감소	세수증가	순효과
FY2009	200만원	13,243	110,985	97,742
	300만원	35,110		75,875
	400만원	52,050		58,935
	500만원	68,105		42,880
FY2010	200만원	15,999	237,129	221,130
	300만원	42,418		194,711
	400만원	62,884		174,245
	500만원	82,280		154,849
FY2011	200만원	19,329	477,128	457,799
	300만원	51,246		425,881
	400만원	75,972		401,155
	500만원	99,405		377,722
연 평균	200만원	16,190	275,081	258,890
	300만원	42,925		232,156
	400만원	63,636		211,445
	500만원	83,263		19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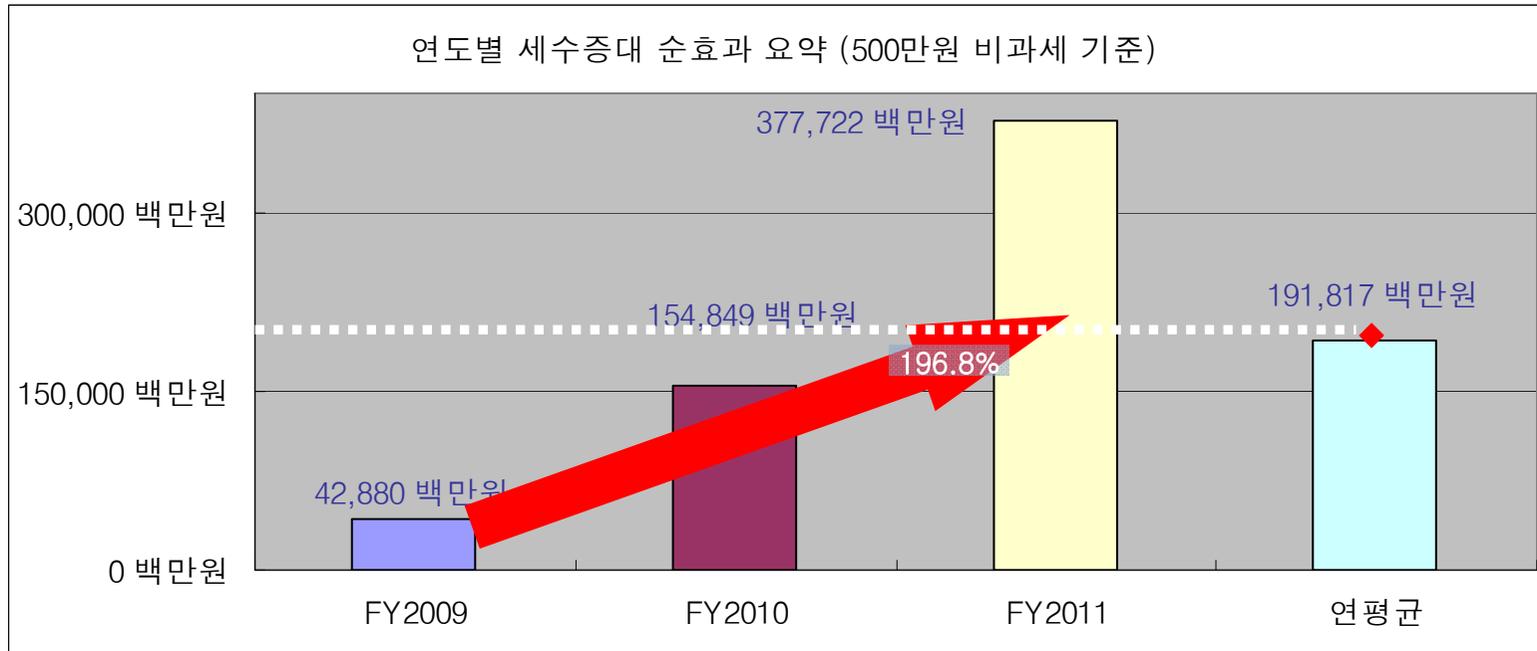
II. 본론

3. 비과세 소득 금액 상향 조정 시 정부 세수 변동 추정

3.3 세수증감 종합 ; 세수감소 및 세수증대 효과 종합비교(계속)

- 향후 3년간 해외건설 사업부문에서 발생하게 될 세수감소 효과(비과세소득 500만원 가정 시)와 법인세 추가발생 규모를 가감하게 될 경우 '09년에 429억원에서 시작하여 '11년에는 3,778억원의 세수 순증가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연평균 196.8%의 성장률에 해당함

연도별 세수증감 순효과 (비과세소득 500만원 기준)				(단위 : 원)
사업연도	FY2009	FY2010	FY2011	연평균
세수증가 순효과	42,880 백만원	154,849 백만원	377,722 백만원	191,817 백만원
연 증가율				196.80%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1 한국 해외건설업의 국제적 위상

4.2 국외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제도

4.3 기타 해외파견 지원제도

4.4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1 한국 해외건설업의 국제적 위상

➡ 한국 해외건설진출 성과

■ 2004년 이후 한국 해외건설 수주규모는 2006년 165억불에서 2009년 476억불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세계 상위 225개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점유비는 수주규모와 관계없이 약 3%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것은 중국, 터키 등 후발국가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한 결과임.(전세계적으로 플랜트 산업이 퇴조한 이유도 있음)

최근 3년 (2006-2008) 주요 국가별 해외건설 매출액 동향 (단위: 억불, %)

순위	2008				2007				2006			
	국가	업체 수	금액	점유율	국가	업체 수	금액	점유율	국가	업체 수	금액	점유율
1	미국	25	511.2	13.11%	미국	35	428.0	13.80%	미국	51	383.0	17.10%
2	프랑스	5	463.5	11.88%	프랑스	5	386.9	12.50%	프랑스	8	336.8	15.00%
3	중국	50	432.0	11.08%	독일	5	320.9	10.30%	독일	6	258.9	11.50%
4	독일	4	388.7	9.97%	이태리	22	253.4	8.20%	일본	15	187.5	8.40%
5	이탈리아	26	313.2	8.03%	스페인	11	251.6	8.10%	중국	49	162.9	7.30%
6	스페인	11	284.3	7.29%	일본	16	238.6	7.70%	스페인	8	127.5	5.70%
7	일본	15	246.1	6.31%	중국	51	226.8	7.30%	스웨덴	1	123.5	5.50%
8	오스트리아	2	177.9	4.56%	스웨덴	1	139.8	4.50%	영국	5	117.0	5.20%
9	스웨덴	1	150.5	3.86%	오스트리아	1	126.9	4.10%	오스트리아	1	108.0	4.80%
10	영국	5	148.5	3.81%	영국	4	113.1	3.60%	이태리	11	67.9	3.00%
11	터키	31	140.5	3.60%	호주	4	101.1	3.30%	한국	10	64.5	2.90%
12	호주	4	121.2	3.11%	터키	23	85.1	2.70%	터키	22	60.7	2.70%
13	한국	13	114.1	2.93%	한국	11	80.2	2.60%	네덜란드	2	60.6	2.70%
	누계		3,491.7	89.5%	누계		2,752.4	88.7%	누계		2,058.8	91.8%

(자료출처: ENR 2009, 2008, 2007)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1 한국 해외건설업의 국제적 위상 ➡ 2008년 세계건설시장 현황

- 미국은 13.1%의 시장 점유율로 매출액 51,116 백만 불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함. 미국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인 프랑스의 경우도 유럽을 포함한 세계 전 지역에서 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46,348 백만 불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음.
- 아시아 국가로서는 중국이 50개 건설업체의 실적을 바탕으로 11.1%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음. 중국 기업의 성장세는 가격경쟁력 측면과 중국정부 차원의 적극적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됨.

2008 국가별 해외건설 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백만 불, %)

업체	해외매출액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캐나다		남미 및 카리브		
	국가	업체수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25	51,116.2	13.11%	15,353.5	19.82%	9,610.2	14.02%	3,027.6	5.95%	10,167.7	8.91%	NA	NA	9,929.5	74.09%	3,026.7	12.70%
유럽	65	212,635.0	54.52%	30,384.5	39.22%	27,363.3	39.93%	18,166.1	35.70%	89,865.7	78.76%	29,311.5	70.19%	3,335.7	24.89%	14,204.9	59.59%
영국	5	14,852.2	3.81%	3,821.6	4.93%	1,852.4	2.70%	312.2	0.61%	3,434.6	3.01%	5,020.3	12.02%	372.5	2.78%	38.5	0.16%
독일	4	38,866.8	9.97%	1,244.0	1.61%	16,672.6	24.33%	1,016.4	2.00%	7,674.8	6.73%	11,348.0	27.17%	469.6	3.50%	441.3	1.85%
프랑스	5	46,348.0	11.88%	4,769.0	6.16%	3,669.2	5.35%	5,033.4	9.89%	25,251.2	22.13%	3,683.5	8.82%	1,989.6	14.85%	1,952.0	8.19%
호주	4	12,123.5	3.11%	939.3	1.21%	2,410.6	3.52%	0.0	0.00%	3,240.2	2.84%	5,384.2	12.89%	123.0	0.92%	26.2	0.11%
일본	15	24,612.0	6.31%	8,729.8	11.27%	8,138.2	11.87%	1,383.3	2.72%	1,199.9	1.05%	3,916.3	9.38%	0.4	0.00%	1,244.0	5.22%
중국	50	43,202.5	11.08%	5,048.4	6.52%	13,723.9	20.03%	21,578.2	42.41%	1,461.7	1.28%	323.4	0.77%	12.9	0.10%	1,046.4	4.39%
한국	13	11,409.8	2.93%	5,970.2	7.71%	3,703.8	5.40%	1,091.4	2.14%	153.8	0.13%	51.3	0.12%	0.4	0.00%	438.9	1.84%
터키	31	14,046.8	3.60%	3,889.0	5.02%	1,657.5	2.42%	1,870.5	3.68%	6,619.6	5.80%	10.3	0.02%	0.0	0.00%	0.0	0.00%
기타	20	18,341.4	4.70%	7,126.3	9.20%	1,925.2	2.81%	3,768.0	7.40%	1,363.1	1.19%	356.7	0.85%	0.0	0.00%	3,802.2	15.95%
누계	225	390,007.6	100.00%	77,470.5	100.00%	68,532.7	100.00%	50,885.1	100.00%	114,106.3	100.00%	41,759.6	100.00%	13,401.9	100.00%	23,839.7	100.00%

Source: The analysis of ENR 2008 Top 225 International and Global Contractors

(Source: ENR 2009, 2008, 2007)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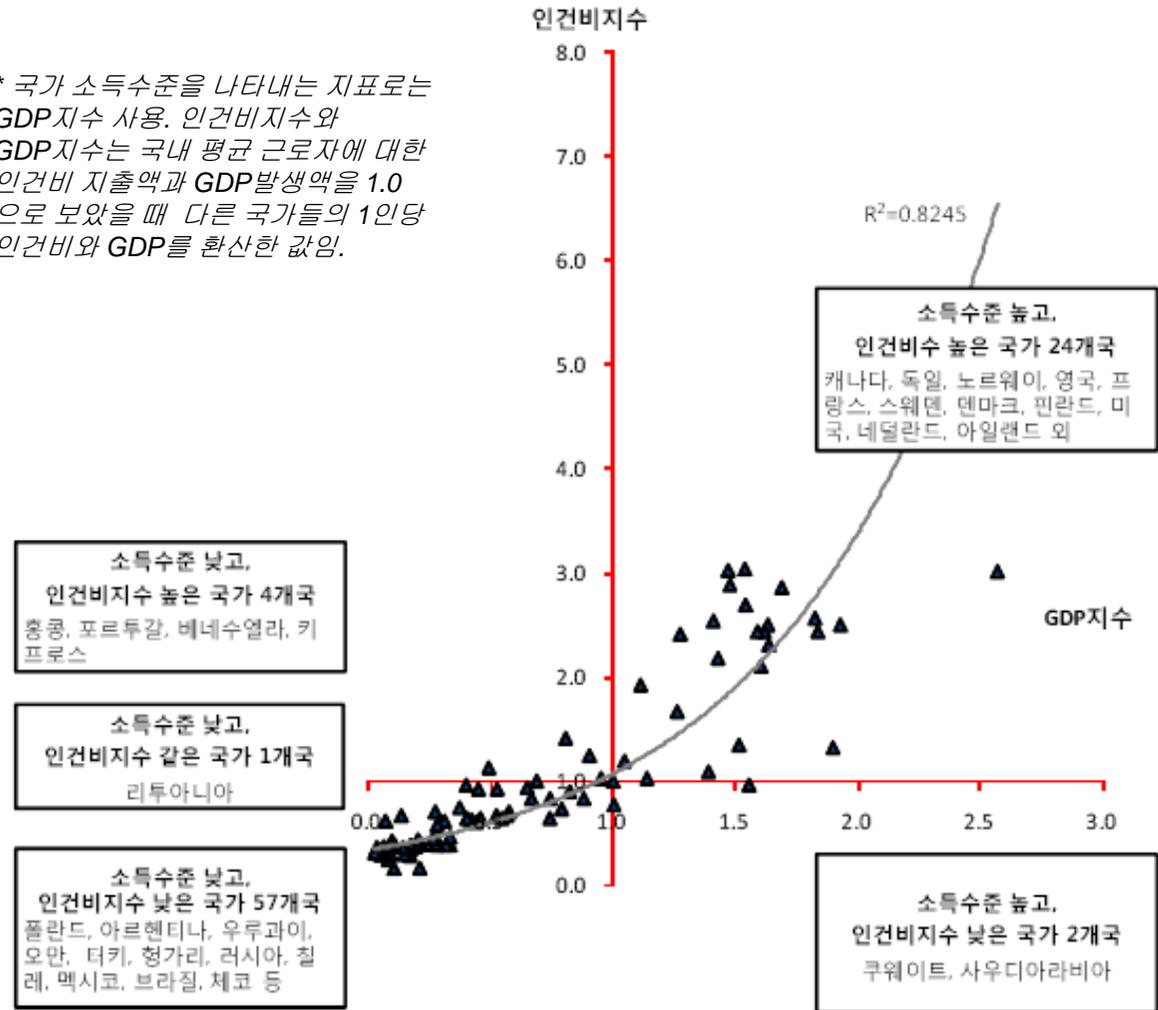
4. 해외 사례 검토

4.1 한국 해외건설업의 국제적 위상

▶ 국내 건설인력 인건비의 국제비교

- 국제 비교로 살펴본 국내 건설인력의 인건비 수준은 생산성 대비 과도한 수준이 아님(추세선 기준으로 위쪽의 국가가 더 많음)
- 저소득 국가의 경우 GDP 대비 인건비의 상승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선진국일 수록 GDP 대비 인건비의 상승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소득 대비 인건비의 국제적 분포현황을 통해서 향후, 국내 인건비가 소득증가 대비 보다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저가의 인건비에 기반한 시장우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국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GDP지수 사용. 인건비지수와 GDP지수는 국내 평균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액과 GDP발생액을 1.0으로 보았을 때 다른 국가들의 1인당 인건비와 GDP를 환산한 값임.



Source: 건설이슈포커스, 건설인력 생산성과 인건비의 국제 비교, 2009-11-30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2 국외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제도 ◀ 검토대상 국가 및 선별 기준

■ 본 회계법인은 당 법인이 회원사로 속해있는 KPMG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국가별로 현재 운용중인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는 오른쪽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 본 조사는 i) G7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수행되었으며 ii) 기타 OECD 국가 중 통상적으로 산업정책이 강한 국가로 여겨지는 대상국가 중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변한 국가를 위주로 선별하였음. 또한,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iii) 중국과 싱가포르를 포함시켰음

주) KPMG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본 조사는 조사 시간 및 투입비용의 제한으로 인하여 각 국가의 조세법을 개관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내용은 본 보고서상의 조사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구분	국가	조사 결과	Ref
G7 국가	미국	비과세 제도 및 해외주거 비용공제 제도	p. 51
	영국	고용주/고용인 국민연금보험 면제 제도	p. 52
	프랑스	전액 비과세 및 부분 비과세 제도	p. 53
	일본	재근 수당 및 특별 수당 비과세	p. 54
	독일	조세협약에 따른 비과세	p. 54
	캐나다	<높은 용역비용 제안으로 인해 자료 수거 어려움>	
	이탈리아	<높은 용역비용 제안으로 인해 자료 수거 어려움>	
기타 OECD 국가	호주	단기 해외파견직원 생활비 지원	p. 55
	덴마크	조세협약에 따른 비과세 및 출장수당 지원	p. 55
	벨기에	해외수당 비과세 및 해외 초과 근무 수당 저세율 적용	
	핀란드	조세협약에 따른 비과세	
	폴란드	해외수당 비과세	
	네덜란드	조세협약에 따른 비과세	
	노르웨이	조세협약에 따른 비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스위스	<높은 용역비용 제안으로 인해 자료 수거 어려움>	
	스웨덴	조세협약에 따른 비과세	
기타 국가	중국	월 해외근무수당 지원	p. 55
	싱가포르	전액 비과세	p. 55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2 국외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제도 ◀ 미국

■ 비과세 제도

» 미국은 해외에 거소(tax home)를 가지고 있으며
일년 중 최소 330일을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하여 법
소정의 일정한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해주고
있음. (2006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과세소득 규모가 매년 증가하도록 규정함)

» 비과세 소득금액은 총 해외 근로소득 총액에서
해외주거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해외근무일수를 월할계산하여 비과세함.

연도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미화)
2000	76,000
2001	78,000
2002	80,000
2006	82,400
2007	85,700
2008	87,600
2009	91,400

■ 해외주거비용공제 제도

» 해외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비용의 예는
주택임대료, 부양가족 교육비, 주택수선비,
수도광열비, 유지비, 개인자산(부동산 등)보험료,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공평세금수당 (Tax
Equalization Payment) 등이 포함되며 이들
주거비용은 해외근로소득에서 일괄공제됨.

» 공제대상 주거비용은 실제 발생한 해외주거비용 중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의 16%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공제한도는 비과세 금액의
30%임. 다만 국가별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다수
유럽국가 및 홍콩, 일본 등과 같은 국가에서 근무할
경우 30% 한도를 상향함.

» 비과세 및 해외주거비용공제에 해당하는
해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
같은 기타 조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2 국외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제도 ➡ 영국

■ 영국 조세 지원제도

» 영국은 현재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별다른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1940년대에 건설업 고용주가 각각의 고용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민연금보험 부담을 덜어주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이직률(Turnover ratio)을 낮추기 위하여 고용주가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에 대해 11%의 율로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Exemption 제도를 도입하였음.

» 동 제도로 인하여 연소득 £15,000 (약 3천만원) 건설근로자 기준, 연 £179~ £240(약 35만원~50만원) 상당액의 절세효과가 있었음.

» 한편,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State Aid Rule”을 규정하고 각 EU 가입국의 조세제도를 통제하여 EU 가입국 간 경쟁을 유발시키는 특별 지원 혜택을 저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Insurance Contribution Exemption 제도를 2012년 10월 30일을 일몰기한으로 설정하여 동 제도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영국 거주자는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영국에 12월기간 중 183일 미만 체류 또는 계속되는 4년동안 평균 91일 미만 체류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해외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2 국외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제도 ➡ 프랑스

■ 일반적인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

»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프랑스에서 납부했어야 하는 금액의 2/3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급여는 프랑스에서 전액 비과세 됨.

■ 부분 비과세 규정 (Expatriate Premium Exemption)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 경우로서, 프랑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해외근로수당에 대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됨.

① 업무수행지가 해외이며 국내 고용주만을 위하여 근무할 경우

② 해외근로수당이 연봉의 40% 초과하지 아니하며 해외근무를 수행하기 전 고용계약에 따라 규정되었을 경우

③ 각 해외출장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 건설업 등 관련 해외근무 시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

» 프랑스 거주자가 12원기간 중 183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며 건설업 및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프랑스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2 국외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제도 ➡ 일본, 독일

■ 일본 조세 지원제도

» 1952년 창설된 비과세소득 규정은 일본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으로 외국에 근무하지만 받는 급여 가운데, 해당 근무에 인하여 이 법률의 일본에서 근무했을 경우에 받아야 할 통상의 급여에 가산해 받는 재근 수당 그 외의 이것에 비슷한 특별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음.

» 이는 재외 공관의 공무원 등 국외에서 근로하는 거주자는 그 국외근로에 대해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해외 생활에 수반하는 생활비의 증가 등을 부담하기 위해 재근 수당의 지급을 받아도 국내에 근무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추가로 받은 재근 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함.

■ 독일 조세 지원제도

» 독일 거주자가 해외에 거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독일 거주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하여 독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독일 또한 EU 지침서(EU Directive)에 따라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하여 EU 가입국 간 동등한 수준의 제도를 채택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2 국외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제도 ➡ 호주, 덴마크, 중국, 싱가포르

■ 호주 조세 지원제도

» 2009년 7월 이전, 이른바 국외 근로소득 (foreign employment service income)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 이후 공무원 등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건설업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됨. 비과세 적용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인해 A\$675 백만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단기간 해외파견직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 덴마크 조세 지원제도

» 덴마크 거주자가 6개월의 기간 중 42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외근로소득에 대하여 덴마크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전액 비과세)

»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으로서 덴마크 정부는 해외파견 근로자에게 일당 DKK455 (약 10만원)의 식대 및 소액비용

출장수당(“퍼디엠”)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박 추가 시, DKK195 (약 4만5천원)의 추가 퍼디엠을 지원함.

• 중국 조세 지원제도

» 중국은 2009년 기준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월 CNY4,800 (약 82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해외출장비 등 퍼디엠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으나 비과세 한도액은 해외국가별 상이하며 중국의 각 성 별로 허용되는 금액 또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 조세 지원제도

» 2003년 국외 제공 서비스 소득(foreign service income)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던 비과세가 2004년 파트너쉽을 제외한 모든 국외 발생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함.

»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3 기타 해외파견 지원제도

■ 공평세금프로그램 (Tax Equalization Program)

» 여러 국가에 지점이나 현지 법인을 둔 글로벌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회사 자체로 '공평세금(Tax Equalization)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 이는 해외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게 될 세액이 그가 본국에 남아있었다면 부담했을 세금 (Hypothetical Tax)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임.

» 파견 근무하는 나라에서 실제 신고(납부)한 세액이 가상세금(Hypothetical Tax)보다 많을 경우, 회사는 차액을 파견근무자에게 지급함. 반대의 경우, 파견근무자는 회사에 차액을 내야 함.

» 전문가들은 통상 해외 파견에 따른 각종 해외 근무 수당, 생활비 보조 등으로, 실제 납부세액이 가상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 대부분의 글로벌기업들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차후에 내부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4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 조세제도 비교분석

➡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해외근로자 지원제도 비교 (사례)

기본 가정 및 분석의 한계

-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조세지원 정책에 따른 세 부담액을 비교하고자 국내와 유사한 해외근로자 비과세 제도 및 비교 가능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를 선정하여 실제 사례분석을 수행함.
- 본 사례에서는 해외건설협회가 국내 소속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해외파견근로자의 직능 별 평균 소득 중 기술직 근로자의 소득금액을 분석대상 평균연봉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소득에는 기본급의 70%에 해당하는 해외근무수당이 포함된다고 보았음. 또한 파견근로자는 1명기간 중 360일을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해당 국가의 파견 근로자가 타국에서 360일 근무할 경우, 각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해외거주 일수만을 고려할 때 한국 및 일본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되며 미국, 프랑스, 덴마크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됨.
- 근로자의 거주지국과 소득 원천지국간의 과세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 쌍방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에서 체류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의한 '거주자' 개념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본 사례 분석의 목적은 특정국가 쌍방간의 과세권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조세지원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데 있기 때문에 일단 소득원천지국(파견된 외국)에서 일률적으로 20%로 과세되고 동 외국납부세액을 각 국가의 조세법 상 계산된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액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기준도 일률적으로 한국과 동일하다고 가정함.(다만, 미국의 경우 비과세 및 해외주거비용 공제 대상 외국원천소득에 대해서 기 납부한 세액은 불공제 됨)
-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해외근로수당은 전액 주택임차비, 자녀교육비 등의 해외생활 실비에 사용된다고 보았음. 또한, 덴마크 세법에 따라 덴마크 해외파견 근로자는 해외근무수당 이외에도 해외근무 일수에 따른 출장수당(퍼디엠)을 추가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분석 상의 결과는 분석의 기본 가정이 변동되거나 본 분석에서 검토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여타 다른 세법 규정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액과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람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4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해외근로자 지원제도 비교 (사례)

	2009년도 평균 환율	USD 1 = KRW 1,276.40	EUR 1 = KRW 1,774.35	JPY 1 = KRW 13.63	DKK 1 = KRW 238.30
	한국 (KRW)	미국 (USD)	프랑스 (EUR)	일본 (JPY)	덴마크 (DKK)
해외건설근로자 기본급	51,309,595	40,199	28,917	3,764,460	215,315
해외근무수당(기본급의 70%)	35,916,716	28,139	20,242	2,635,122	150,721
해외건설근로자의 평균연봉* ¹	87,226,311	68,338	49,160	6,399,583	366,036
외국납부세액 (20%)	17,445,262	13,668	9,832	1,279,917	73,207
자국과세소득	87,226,311	68,338	49,160	6,399,583	366,036
비과세 소득(소득공제)* ²	(18,000,000)	(54,823)	(49,160)	(2,635,122)	(366,036)
해외주거비용공제	-	(13,515)	-	-	-
과세표준	69,226,311	-	-	3,764,460	-
세율* ²	27.5%			25.3%	
산출세액	19,037,236	-	-	952,408	-
외국납부세액공제 (100%)	(17,445,262)	-	-	(952,408)	-
결정세액(각국 통화 기준)* ²	1,591,973	-	-	-	-
결정세액(원화 환산)	1,591,973	-	-	-	-
기타 지원금 (출장수당 등)	-	-	-	-	55,715,732
지원금 차감 후 세액 부담액	1,591,973	-	-	-	(55,715,732)

주1) 해외건설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해외건설협회가 국내소속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국내직능별 급여기준표 상 기술직 급여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2009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임

평균연봉 중 기본급과 해외근무수당의 비율은 1:0.7 이라고 보았음.

주2) 각 국가의 소득세법상 상가 근로자 평균연봉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적용한 것임.(09년 세법 기준) 과세표준 산정 시 비교가능성을 위해서 종합소득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결정세액 산출시에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의 기타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음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4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해외근로자 지원제도 비교 (사례)

국가 별 해외파견 근로자 소득세 납세수준 비교



- 본 조세지원정책 사례결과는 각 국가의 자국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는 바, 근로자의 거주지국과 파견국 쌍방간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 규정을 고려하지 않았음.
- 본 사례와 달리, 미국 해외파견 근로자가 타국에서 330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 비과세 및 해외주거비용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미국에서 과세소득이 발생하게 됨.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해외파견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타국에서 근무하고 해외에 거소를 두는 경우 한국 및 일본 세무상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자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되어 본 사례의 결과와 상이해 질 수 있음. 동 경우, 일본에서는 해외근로수당 및 재근 수당 뿐 아니라 총 급여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됨.
- 본 세부담액은 해외파견국의 소득세율 및 실제 해외근로수당 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II. 본론

4. 해외 사례 검토

4.4 주요 국가의 해외파견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 미국의 경우, 해외근로소득 및 해외 거주비용 공제 제도를 통해서 산업종류를 불문하고 해외근무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비과세 제도를 기 적용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추가 허용하지는 않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제도는 해외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수취하는 전체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자국내에서 근무했을 때와 비교하여 추가로 받은 해외근무 수당 분에 대해서만 적용됨.
- EU 가입국의 경우 EU 지침에 따라서 역내국가간 동등한 수준의 조세감면 및 지원제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국차원에서 해외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용하지는 않고 있음.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주택수당 등 생활비 보조에 국한하는 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외근무를 장려하고 있음.
- 조사 대상 국가 중 현재 해외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국한하여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덴마크가 유일함.
- 국가 차원에서의 조세 지원 이외에도, 다수의 글로벌 기업은 이른바, 공평 세금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로자의 해외 근무를 장려하는 정책을 기업차원에서 도입하여 근로자의 현지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기업이 공평세금프로그램에 따라 해외파견 근로자를 지원할 경우 동 금액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 해주고 있음.
- 조세제도 비교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비교대상 국가 중, 한국 거주자의 해외파견 시에만 당해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며, 덴마크의 경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오히려 마이너스 세금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III. 요약 및 결론

II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국내 주택부문 수요의 부진에 따라서 국내 건설부문은 성장한계에 다다랐음. 이에 따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내 건설업체가 국제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급격히 성장하여 왔는데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2009년 현재 세계시장 전체 매출액의 6.7% 수준을 담당하고 있음
- 주요 해외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해외 건설업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 숙련된 건설전문인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기회가 될 경우 해외건설현장 파견근무를 할 의향을 드러냄. 해외근무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불편함, 근무지 환경/생활여건의 어려움 등을 들었으며, 기타 생활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음.
-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현행 비과세소득 규모만으로는 해외 파견근무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적인 조세 지원정책이 될 수 있어야 해외파견 근무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 비과세 금액의 적정상향 규모와 관련하여 월 300~400만원 수준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음.
- 해외 비과세소득 규모를 상향조정 할 경우, 정부의 소득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장 보수적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감소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됨. 특히 해외건설부문의 급격한 성장과 수익성 향상으로 인하여 향후 증가하는 법인세 금액이 소득세 감소효과를 압도적으로 상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
- OECD 국가 및 전통적으로 국가의 산업정책이 강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 사례를 조사한 결과, 미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의 국가들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비과세 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평균적인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수준을 추정하여 상호 비교해본 결과 모든 국가에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세가 발생함.



“감사합니다”

삼성 KPMG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